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위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도 매뉴얼

2023. 6.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발간사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산업안전분야에서는 여전히 안전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체되어 있는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2022년 11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지난 5월에는 위험성평가 절차와 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위험성평가가 확산되고 중대재해 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약 1,400개의 민간재해예방기관과 12,000여명 종사자분들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대행함은 물론 다양한 규모와 업종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지도하고 있습니다.

본 책자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새롭게 도입되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지원·지도할 때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제 I 편에서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제 II 편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지도하기 위한 절차 순서대로 확인이 필요한 내용과 추가적으로 유용한 정보 및 주의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제 III 편에서는 실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단계별(사전준비 단계부터 기록 및 보존단계까지)로 주요 확인사항, 지도내용, 착안사항과 예시를 수록하였습니다.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는 위험성평가 지도 전략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 실시 단계별로 지원·지도할 시에 본 책자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작·배포한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와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먼저 숙지하는 것이 이 책자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비록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번 책자 발간을 계기로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안착되고 확산되어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CONTENTS

PART

I

위험성평가
개요 ... 1

- 01. 위험성평가 법적 근거2
- 02. 위험성평가 추진 경과4
- 03. 용어 설명6
- 04. 위험성평가 실시 핵심사항7

PART

II

위험성평가 지도
전략 수립·이행 ... 15

- 01. 방문 전 준비사항 17
- 02. 사업장 출입 및 관계자 면담 20
- 03. 서류 검토 24
- 04. 현장 점검 26
- 05. 총평 28

PART

III

절차별 핵심 지도
POINT ... 31

- 01. 사전준비 34
- 02. 유해·위험요인 파악 41
- 03. 위험성의 결정 48
- 0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8
- 05. 위험성평가의 공유 65
- 06. 기록 및 보존 67

PART
IV

참고자료 ... 71

[참고 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최초-정기-수시)(예시) ... 72
[참고 2]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최초-상시)(예시) 83
[참고 3]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안내 94
[참고 4] KRAS 사용 안내 98
[참고 5]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착안 사항 100
[참고 6] 최근 사망사고 다수 발생 12대 기인물 안내 105
[참고 7] 업종별 산재예방 지원사업 안내 106
[참고 8] 안전보건교육 체계도 109
[참고 9] 24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지표 110
[참고 10]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115



◆ 이 매뉴얼은 민간재해예방기관 종사자가 재해예방 위탁 업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지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도내용 및 방문주기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참조할 수 있으며, 각 기관 종사자의 업무수행 또는 본연의 업무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위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도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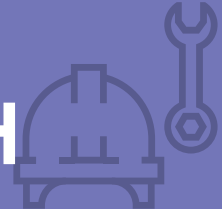
Part I

위험성평가 개요

01. 위험성평가 법적 근거
02. 위험성평가 추진 경과
03. 용어 설명
04. 위험성평가 실시 핵심사항

01

위험성평가 법적 근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23. 5.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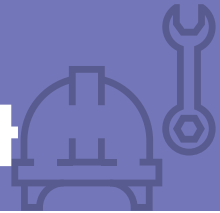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02 위험성평가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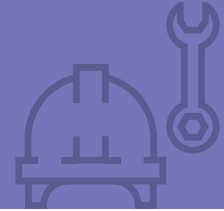
그간 위험성평가는 어떻게 운영되어 왔나요?

- ('04 ~ '08년)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 '08년 산업안전보건법 선진화연구회를 구성하여 도입방안 논의
- ('09. 2. 6.)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개정
 - 제5조 제1항 후단에 사업주의 의무를 선언적·포괄적으로 규정
- ('10~'12년)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 실시
- ('12. 9. 26.)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제정
 -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도입(제3장)
- ('13. 6. 12.)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제정
 -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제5조제1항 후단 삭제)
- ('14. 3. 12.) 제도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반영
 -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의무 규정(시행규칙 제92조의11)
- ('16. 1. 27.) 신설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직무에 포함
- ('19. 1. 15.)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전부개정(시행 '20. 1. 16.)
- ('20. 1. 14.)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시행 '20. 1. 16.)
- ('21. 1.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2. 1. 27.)
 - 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포함
- ('23. 5. 2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시행 '23. 5. 22.)

참고 : 해외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비교

구분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근거 법령	안전보건관리 시행령	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보호법	노동안전위생법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위험성평가) 시행령
도입 시기	1992년	1996년	2008년	2006년
주요 내용	사업주는 근로자 및 관련자의 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적절하고 충분히 평가해야 하고, 개선 시 예방원칙에 따라 실시 (regulation3,4)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하며(Law5), 개선시 위험이 없거나 최소화 되도록 설계, 위험의 근원적 제거 등을 실시(Law4)	사업주는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작업방법·작업순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험성 또는 유해성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에 정하는 조치 및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법 제28조의2)	사업주는 사업 관련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전보건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을 제거·관리하여야 함 (Regulation 3, 4, 5)
의무 사항	시행령에서 정한 위험성평가 관련 규정에 대한 준수 의무 有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충족을 위해 관할관청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 有	노력의무만 부과, 법적제재 없음	시행령에서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의무제시
벌칙 내용	- 가벼운 사안의 경우 2만 파운드 이하 벌금 - 고의 또는 중대의 경우 위반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병과 가능)	- 사업주 또는 책임자 25천 유로 이하의 과태료 - 근로자 5천 유로 이하의 과태료 - 반복·고의 위반, 근로자의 생명·건강이 위협 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Law26)	없음	1차위반시 벌금 1만달러 이하, 2차 위반시 2만달러 이하 벌금 또는 6월 이하 징역 (병과 가능) (Regulation 8)
문서화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평가 결과 문서화	없음	평가 관련 서류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

03 용어 설명



🎯 위험성평가 관련 용어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고시 제3조 정의)

다른 기준에서의 정의

- 1)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위험 분석(risk analysis)과 위험 평가(risk evaluation)로 구성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KS A ISO/IEC Guide 51)
- 1)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리스크 파악(risk identification),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과 리스크 판정(risk evaluation)에 대한 전반적 프로세스(KS A ISO/IEC Guide 73)

2. 유해·위험요인 Hazard

-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고시 제3조 정의)

다른 기준에서의 정의

- 1) 유해요인(Hazard): 잠재적인 유해(harm) 원인(source) (KS A ISO/IEC Guide 51)
- 2) 위험요인(Hazard): 상해 및 건강상 장애(injury and ill health)를 가져올 잠재적인 요인(source)
*(KS Q ISO 45001)
* 위험요인(hazard)에는 해를 끼치거나 위험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요인(source) 또는 상해 및 건강상 장애에 이르게 하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포함될 수 있다.

3. 위험성 Risk

- 유해·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증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고시 제3조 정의)

다른 기준에서의 정의

- 1) 위험성(risk): 유해 발생 확률*과 해당 유해 심각성의 조합(KS A ISO/IEC Guide 51)
* 발생 확률에는 유해 상황(hazardous situation)에의 노출, 위험 사건(hazardous event) 발생, 유해 방지 또는 제한 가능성이 포함된다.
- 2) 리스크(risk): 불확실성의 영향(KS Q ISO 45001)

04

위험성평가 실시 핵심사항



위험성평가, 누가 하나요?

핵심 사항

- ▶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
 - ▶ 도급에 의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
- ※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도급인이 이행해야 할 개선대책과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인이 개선

FAQ

Q1. 구내식당, 청소, 경비 등의 업무를 도급을 줬는데, 도급인과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해야 하는지?

A1. 도급 사업주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수급인 사업주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및 제64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도 도급인의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또는 도급인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어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도급인이 이행해야 할 개선대책과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인이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음

Q2.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전신주, 도로상 맨홀, 고객 집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 개선대책 수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A2.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은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원적인 대책 수립이 우선되어야 함. 다만, 맨홀이나 전신주와 같이 작업 장소 내 사업주가 소유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을 적극 이행하여야 하고, 도급 관계라면 도급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함



위험성평가, 언제 하나요?

핵심 사항

- ▶ **(최초평가)** 사업장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실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 1개월 미만의 기간이 걸리는 작업이나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 개시 이후 지체없이 시행
- ▶ **(수시평가)** 사업장에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거나, 기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 ▶ **(정기평가)** 최초평가와 수시평가의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
- ▶ **(상시평가)** 매월 1회 이상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 제안제도, 아차사고 결과 확인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매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관계자 논의·공유 및 이행상황 점검,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

FAQ

Q1. 최초 위험성평가는 언제하는지?

A1.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에 착수하여야 함

Q2. “착수”의 구체적인 의미는?

A2. 최초평가의 착수란, 유해·위험요인 파악 절차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최소한 실시규정을 작성하는 등의 사전준비 단계는 완료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단계를 수행하고 있어야 함

Q3. 최초평가 후 첫 정기평가의 실시 시기는?

A3.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이란 모든* 위험성 결정과 함께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된 날을 의미함(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 완료 여부와는 관계 없음)

* 반드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에 장기간이 걸리는 일부 유해·위험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과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이 마무리된 날(사업주또는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가 있는 날 등)을 의미함



위험성평가, 대상은?

핵심 사항

- ▶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의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 실시
-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이 위험성평가의 대상
- ▶ **아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차사고의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 대상에 포함
- ▶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사고의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

FAQ

Q1. 위험성평가 대상에 아차사고가 추가되었는데 아차사고의 범위는?

A1. 아차사고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으로 매우 경미한 재해를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아차사고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음

Q2. 임시작업과 아차사고를 꼭 위험성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A2. 임시·수시·비정형작업은 산업재해 발생 확률이 더욱 크기 때문에 임시·수시·비정형 작업 시에는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아차사고는 반복되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아차사고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위험성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Q3. 정기적인 보수작업이 수시평가 대상인지?

A3.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시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정기적인 보수작업이라 할지라도 신규 기술 도입 등으로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평가 대상임



위험성평가, 방법은?

핵심 사항

- ▶ 위험성평가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사업장 여건과 유해·위험요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음
- ▶ **(체크리스트법)**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현재 조치가 적정한지 아닌지 “○” 또는 “×”으로 표시하는 방법
- ▶ **(핵심요인 기술법)**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
-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위험성 결정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능하고 판단할 때,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
- ▶ **(빈도·강도법)**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수준)를 산출해 보고, 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

FAQ

- Q1.** 현재까지 빈도·강도법을 사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왔는데 이번에 개정된 위험성평가 지침에는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이 추가되어, 이 방법을 사용해야만 하는지?
- A1.** 핵심요인 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은 중·소규모 사업장이 쉽고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된 방법으로, 기존의 빈도·강도법을 계속 활용해도 되고, 추가된 방법들 중 사업장에서 각자의 사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가지 방법에만 국한하지 않고, 적절하게 조합하여 실시할 수도 있음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는?

핵심 사항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과정(①~⑥)에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 시켜야 함

- ①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마련 ② 허용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
- ③ 유해·위험요인 파악 ④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결정 ⑤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 ⑥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 확인

FAQ

Q1.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이 바뀌었는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는지?

A1. 위험성평가의 전체 단계에 근로자들을 참여시키도록 한 것은 보다 내실있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 참여의 방법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로자의 참여 범위를 고려해야 함

Q2.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게시, 주지 등은 어떻게 하는지?

A2.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결정 결과 등을 근로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자율적으로 게시, 주지하여야 하며, 오프라인 게시판이나 온라인상의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효과적인 게시 등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또한, 위험성평가 결과 중요 위험요인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으로 TBM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위험성평가, 공유는?

핵심 사항

▶ 공유 내용

- ①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
- ②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 ③ 유해·위험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 ④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 공유 방법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임

FAQ

Q1. 상시평가를 채택하는 경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가 의무화되었는데 해당 공정에 인원이 많아 작업 근로자 전원이 참여하기 힘든 상황, 작업 근로자 모두를 TBM에 참여시켜야 하는지?

A1.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작업에 투입하는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전원이 참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불참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전에 TBM리더를 중심으로 적절한 전달체계를 통해 공유, 전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Q1.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은 TBM을 통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유해·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기타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주지를 안 시켜도 되는지?

A1.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은 TBM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결과, 감소대책 및 실행 계획 등은 반드시 알려야 함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위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도 매뉴얼



Part II

위험성평가 지도 전략 수립·이행

01. 방문 전 준비사항
02. 사업장 출입 및 관계자 면담
03. 서류 검토
04. 현장 점검
05. 총평

위험성평가 지도 수행 절차 요약

01 방문 전 준비사항

- 사업장의 정보 사전 파악
- 개인보호구 등 준비
- 사업장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자료 준비

02 사업장 출입 및 관계자 면담

- 관계자에게 방문목적 등 전달
- 면담을 통해 위험성평가의 목적, 절차 등 설명
- 위험성평가 실시현황 및 인식수준 등 파악
- 점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 요청

03 서류 검토

- 위험성평가 기록 확인
-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기타 서류 확인

04 현장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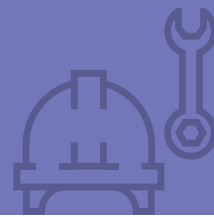
- 순회점검 방식으로 공정·작업별 유해·위험요인 및 통제·조치 상태 확인
-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점 확인

05 총 평

- 서류 검토, 현장 점검 및 면담결과 등을 정리하여 사업장 관계자에게 강평 실시
-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고 산재예방 지원사업 안내

01

방문 전 준비사항



주요내용

사업장 정보 파악	사업장 근로자수, 재해발생 현황, 위험기계·기구 보유현황 등 파악 가능한 사업장의 정보파악
개인 보호구 등 준비	방문 대상 사업장에 따라 필요한 개인보호구와 신분증, 작성서류 등 준비
제공 자료 준비	위험성평가 관련 설명자료, 동종업계 주요 사고사례 등 사업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보건자료 준비

- **(사업장 정보 파악)** 방문 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은 사업장의 효과적 위험성평가 이행은 물론, 사업장과 민간재해예방기관과의 신뢰 형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 사업장 현황 및 기본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험성평가 중점 지도방향과 주요내용을 사전에 설정하는 것이 성공적 위험성평가 지도에 도움이 됩니다.
 - 사업장 관리카드 등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세부 업종, 근로자 수, 산업재해 현황, 보유설비 등을 꼼꼼히 알아봅니다.
- **(개인 보호구 등 준비)** 지도업무 중 안전을 위해 방문 대상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따라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등의 개인보호구와 지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 **(제공 자료 준비)** 지도 후 총평 시 사업장에 제공할 위험성평가 설명자료, 점검표, 교육자료와 같은 안전보건자료를 준비합니다.



최신 위험성평가 자료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개편을 통해 위험성평가 관련 최신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최신자료를 활용하세요

※ 자료 예)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가이드', '건설현장 TBM 실천 가이드'

사업장 정보파악 내용

구분	내용	비고(확인자료)
사업장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등) 주요생산품 또는 주요업무 (건설업)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진행 현황 ■ 근로자수 ■ 안전, 보건업무 담당자 ■ 관리책임자등 선임현황 ■ 업무(작업) 개요 ■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 검사대상 기계·기구 및 유해·위험물질 보유 현황 	사업장 관리카드

사업장 준비서류 목록

구분	비고(확인자료)
사고 관련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조사표 ■ 아차사고 조사서류
위험성평가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매뉴얼, 지침서, 사규 등 ■ 유해·위험요인 파악자료, 위험성평가표 등
기타 산업안전보건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선임서류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업무수행 서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서류 ■ 안전보건관리규정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서류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 ■ 안전·보건·기술지도기관 기술지도 서류 ■ 관리감독자 명단 ■ 위험 기계·기구 설비 현황 및 안전검사 관련 서류 ■ 작업환경측정 결과 서류 ■ 유해·위험물질 취급현황 서류

지도 방문 전 체크리스트

구분	내용	예 / 아니오
방문 전 사업장 정보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현황은 파악했는가? - 사업장관리카드, 안전·보건·기술지도 상태보고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일정은 사업장과 협의 했는가? 	
제공 자료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안내자료를 준비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대 기인물(건설/제조) 자율점검표를 준비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예방 지원사업 안내문은 준비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이 보유한 기계·기구, 작업 형태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에 제공할 자율안전점검표는 준비했는가? 	
점검 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지도 점검표를 준비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준비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안내용 준비서류 목록은 준비했는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기관에서 준비한 안전보건자료, 물품 등을 준비했는가? 	

02

사업장 출입 및 관계자 면담



주요내용

사업장 출입	사전에 사업장 방문 일정 협의
관계자 면담	사업장 담당자 등을 만나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각 계층 면담을 통해 위험성 평가의 실시와 인식의 정도를 점검
협조 요청	위험설비·장소·공정 등 사업장 및 관계서류를 최대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 **(사업장 출입)** 사업장의 담당자와 유선 등으로 연락하여 방문시간을 사전에 약속합니다.
- **(방문목적 설명)** 계약된 업무내용과 함께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위험성평가의 “대행”이 아닌 “지원”임을 명확히 전달하고, 사업장에서는 지도내용을 참고하여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행하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 신분증, 명함 등을 통해 방문 기관이 어디인지 알 수 있도록 하고, 공문 등의 근거가 있다면 함께 제시합니다.
- **(관계자 면담)** 담당자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사업주 및 근로자와 면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먼저,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안내하여 지도대상 사업장이 위험성평가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과 위험성평가에 대한 인식수준 등을 파악하여 다음 지도 단계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 위험성평가 제도 설명
 - 실시 주체 및 역할
 - 실시 시기 등 절차
 - 실시 방법
- 위험성평가의 특징
 - 목적 및 사업장 필요성
 - 이행 시 긍정적 효과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단계별 중점사항 안내
 -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결과의 공유
- 산재예방 지원사업 안내


- **(협조 요청)** 사업장 보안, 내부규정 등의 사유로 출입이 금지되는 곳 등을 포함하여 사업장의 전반적인 위험설비·장소·공정 등에 대한 위험성평가 지도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협조를 요청합니다.

- 가급적 현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동행을 부탁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강평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진 촬영은 사전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주의 사항

- 면담 시 지나치게 강압적인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문기관의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 하되,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 상대방의 말을 지나치게 자르는 태도는 지양하고, 질문 또는 건의사항 등에 대해 경청하고 성실히 답변합니다.
- 사업장의 사내 규정을 존중합니다.
- 사업장의 생산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합니다.
- 안전점검에 적합한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주,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현황과 인식수준을 파악할 때 아래 핵심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질문
Q1**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나요?

<실시하고 있을 경우 추가질문>

- ▶ 위험성평가를 언제, 어떻게 실시하나요?
- ▶ 위험성평가 관련 규정, 절차, 매뉴얼 등이 있나요?
- ▶ 위 매뉴얼은 누가, 어떻게 작성하였나요? 근로자는 위 매뉴얼을 알고 있나요?

<실시하지 않은 경우>

- ▶ 위험성평가의 개념, 절차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안내자료 배포)
- ▶ 이후 현장을 안전보건관계자와 함께 점검하면서, 노·사 대표 등에게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절차와 방법, 동종·유사업종의 사고사례 및 개선대책 등을 설명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필요성·중요성을 더욱 강조

**핵심질문
Q2**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있나요?

- ▶ 작업현장에서 근로자 대상 인터뷰 시 추가 확인
- ▶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서 근로자를 참여하도록 안내

<추가질문>

- ▶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한다면) 어떤 근로자가 참여하나요?

**핵심질문
Q3**

1. 사업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유형이 무엇인가요?

2. 사업장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유해 위험요인이 무엇인가요?

- ▶ 현장점검 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 및 비교

<추가질문>

- ▶ 현재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나요?
- ▶ 어떻게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요?

핵심질문
Q4

아차사고, 산업재해를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있나요?

- ▶ 현장 확인 및 작업현장에서 근로자 대상 인터뷰 시 추가 확인

〈추가질문〉

- ▶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서인가요?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 ▶ 아차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사업장에 보고하고 있나요? 보고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 아차사고와 휴업을 요하는 사고 등 사고사례를 모든 근로자에게 전파·공유하고 있나요? 공유하지 않았다면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인가요?

핵심질문
Q5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하고 이를 확인하고 있나요?

- ▶ 현장 확인 및 작업현장에서 근로자 대상 인터뷰 시 추가 확인

핵심질문
Q6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안전교육 등을 통해 공유하나요?

- ▶ 작업현장에서 근로자 대상 인터뷰 시 추가 확인

〈추가질문〉

-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하고 있나요?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수리·보수 등 갑자기 진행되는 비정형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하고 있나요?
- ▶ 수리·보수 등 갑자기 진행되는 비정형작업의 위험성평가를 하고 있나요?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귀사의 비정형작업 관련 매뉴얼 등이 있나요? 비정형작업의 진행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03 서류 검토



주요내용

- 기록 확인** 위험성평가 실시에 따른 기록의 내용을 확인
- 기타 서류 확인** 아차사고 사례, 산업재해 현황, 시정지시 사항 등 관련 서류 확인

- **(기록확인)** 현장에서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위험성평가 전체과정”의 기록을 검토하는 단계로, 사전에 파악한 사업장 정보(위험설비·장소·공정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 결과의 공유”까지 전체과정에 대해 면밀한 서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기록과 보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위험성평가 대상이 되는 공정·작업 등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 **(기타 서류 확인)** 위험성평가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에 관련한 서류들을 확인합니다.
 - ①아차사고 사례 수집 내용, ②산업재해 현황, ③정부 기관의 시정명령 내용, ④기계·기구 현황, ⑤사용물질 현황 등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들이 위험성평가에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가 필요한데도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합니다.

단계별 검토서류(예시)

① 사전준비

- 실시규정 서류
- 관계자 교육 서류
- 위험성 수준과 그 판단 기준 등의 설정
- 안전보건정보 조사 서류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서류
- 근로자 상시 제안 서류
- 인터뷰 등 청취조사 서류
- 안전보건 자료 서류

③ 위험성의 결정

- 위험성평가표

④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과 실행

- 위험성평가표
- 현장 개선 사진 등 서류

⑤ 위험성평가 결과의 공유

-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공유한 서류
- 안전보건교육 서류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서류
- 카카오톡 등 SNS 활용 서류

04 현장 점검



주요내용

순회점검 현장을 직접 순회하며 점검하고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 등에게 설명
중점지도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점지도

주의 사항

■ 현장 점검 시에는 항상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직접 기계를 작동시켜서는 안되며, 항상 현장 책임자의 안내에 따릅니다.

● (순회점검) 사업장 담당자 등의 안내에 따라 현장의 공정·작업 상황 등을 돌아보며 점검합니다.

- 서류 검토 단계에서 확인한 위험성평가표와 비교하여 누락된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 안전난간·방책·방호장치·국소배기장치 등의 안전·보건조치 상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거나 없는 경우 등

- 근로자의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책임자 등이 그 사항을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 다회차 점검의 경우 이전점검에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필요한 경우 현장 근로자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해당 작업에 대해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와 “위험성 감소대책이 적절한지” 여부를 관계자와 함께 면밀히 살펴봅니다.

- 이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근로자들은 참여하였는지, 위험성평가 결과는 근로자들에게 공유되고 있는지 등을 함께 점검합니다.

● (중점지도)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및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파악하고 중점적으로 살펴보아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개선토록 지도합니다.

* (추락)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 방호장치, LOTO, (부딪힘)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최근 사고사망 및 중상해 재해를 분석하여 고위험작업/상황과 재해유발요인을 도출한 자료

 TIP

- ① 위험성평가 절차별 지도 상세 내용은 제III장을 참고하세요
- ②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관련 조치 내용은 제IV장 참고5의 착안사항을 참고하세요
- ③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05 총평



주요내용

점검결과 설명 서류검토, 현장점검 및 면담결과 등을 정리하여 사업장 관계자에게 강평을 실시
마무리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고, 산재예방 지원사업 안내

- **(점검결과 설명)** 위험성평가 지도에 참여한 사업장 관계자에게 면담·서류검토·현장 순회점검을 통해 확인된 지도 결과와 조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 특히,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합니다. 위험성평가와 연계하여 유해·위험요인으로 발굴되지 않았거나 위험성 감소대책이 마련·실행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지도합니다.
- **(마무리)** 사업장 방문 전에 준비한 안전보건자료를 전달하고 산재예방 지원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합니다. [참고기]
 - 지도요원의 업무 및 지도 범위의 협의사항 등에 따라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의 일부 또는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해 보고서 형식으로 위험성평가 결과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도요원이 작성하는 결과서는 당일 현장 순회점검 등 제한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된 사항이므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는 사업장이 스스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단계별 Key Message

- **(면담)** 위험성평가의 필요성 및 재해감소 효과, 근로자 참여의 중요성 등 안내
- **(서류검토)** 위험성평가표에 기록된 사항 중 누락·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
- **(현장점검)** 위험성평가 이행여부, 추가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위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도 매뉴얼



Part III

절차별 핵심 지도 POINT

01. 사전준비
02. 유해·위험요인 파악
03. 위험성 결정
0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05. 위험성평가의 공유
06. 기록 및 보존

본 장의 구성 및 활용방안 소개

구성

- (주요 확인 POINT) 위험성평가 각 단계별 사업장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필수사항을 확인하는 요점 목록
- (지도내용) 사업장에 “주요 확인 POINT”에 대한 지도 시 방법 및 방향에 대한 가이드
- (착안사항) “주요 확인 POINT”에 대한 지도 시 항목별 보조자료
- (예시) 사업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도식화된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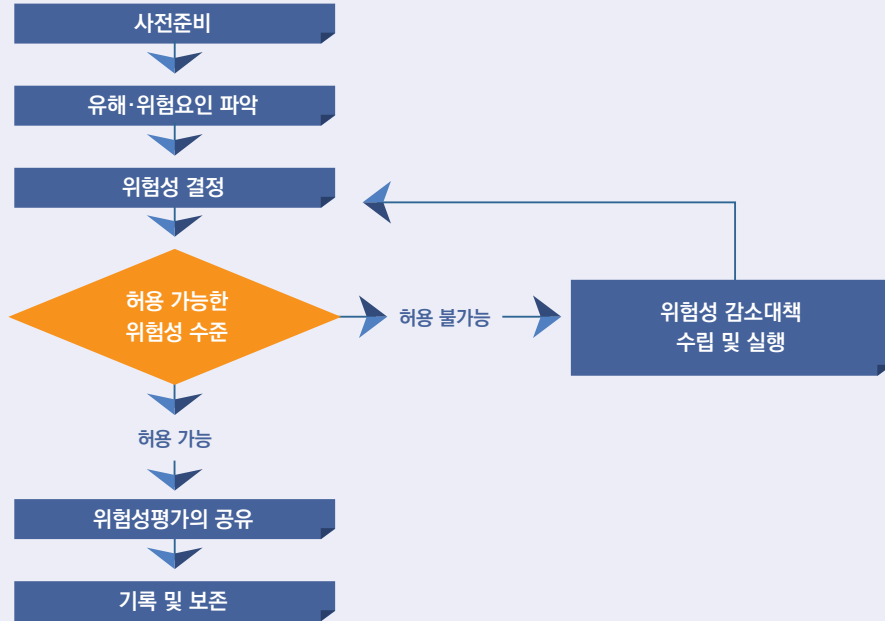
활용방안

- (위험성평가 전체 흐름 이해)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며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실행하는 등 일련의 과정으로 “종료” 개념이 없는 “지속적인 활동”
※ 위험성평가 전체 흐름에 대해 강조하고, 단계별 각론 주요내용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
- (주요 확인 POINT)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단계별 항목에 대한 이행여부를 “예”, “아니오”로 구분한 다음, 지도내용, 착안사항 및 예시를 통해 충분한 설명 및 지도
- (메모) 이번 점검에서 미비한 점들을 기록한 다음, 다음번 점검 시 개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향상 시킬 수 있도록 활용

추가자료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활용

위험성평가 절차



단계
01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의 수준 등 확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단계
02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
03

위험성 결정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과 비교하여 판단된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

※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등 간편한 방법 활용

단계
0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의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단계
05

위험성평가의 공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

단계
06

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기록 및 보존

01 사전준비 (1단계)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작성, 평가 대상 선정, 위험성 수준 기준 설정,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설정,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은 사전준비 단계 생략 가능



[사전 준비] 주요 확인 POINT

확인 사항	예	아니오	해당없음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개정 여부 포함)이 마련되어 있는지 (수행체계를 구축하였는지)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이 적정한지(포함사항 확인)			
■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 위험성 수준 기준 설정이 적정한지			
■ 위험성 수준에 대한 판단기준이 설정되어 있는지			
■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지			
■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조사하여 활용하는지(권장)			
■ 사전준비 단계에 근로자가 참여하였는지 여부			




메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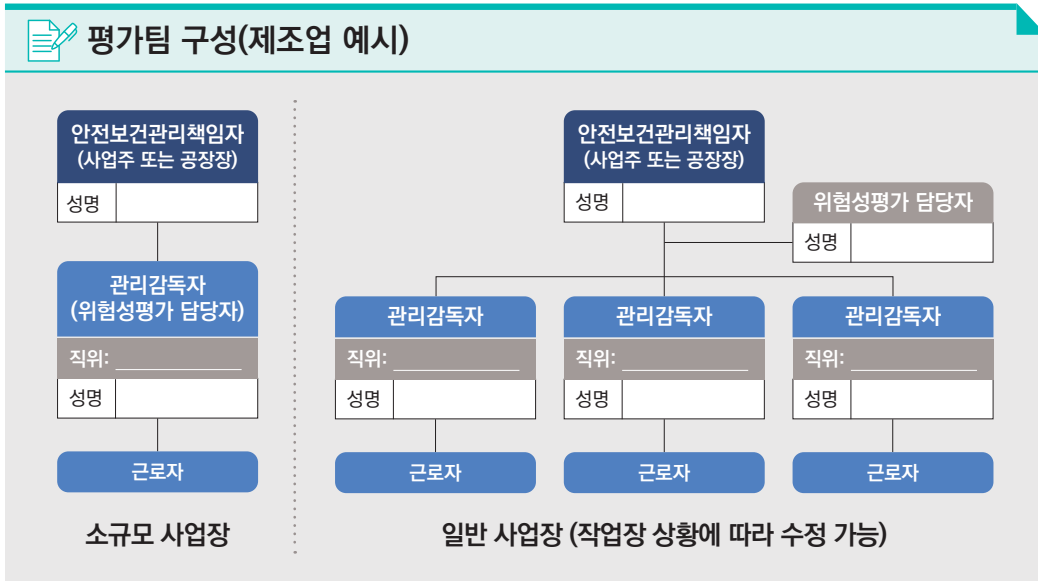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관련


지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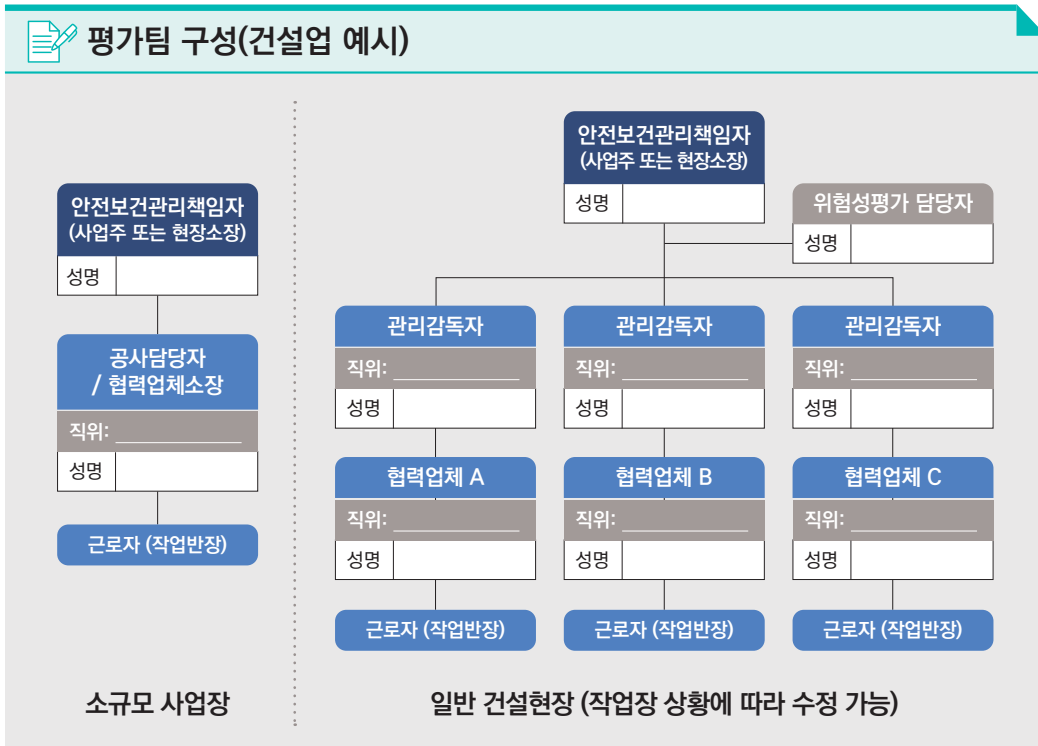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작성되었는지, 실시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이 누락 되지는 않았는지, 실시규정 항목별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 **실시규정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사업장 특성 및 상황에 맞게 실시규정을 작성토록 지도합니다.
 - ※ 실시규정 예시는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및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실시규정을 작성한 경우**
 - 지침에 따른 실시규정의 포함사항이 누락 없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합니다.
 -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포함사항

① 평가의 목적 및 방법	②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③ 평가 시기 및 절차	④ 근로자에 대한 참여·공유 방법 및 유의사항
⑤ 결과의 기록 및 보존	
- **수행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주 의지 표현(방침·목표)이 없는 경우**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성평가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주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와 비전을 제시하는 것과 안전보건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중요함을 지도합니다.
- **평가팀이 구성되지 않거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실시규정, 사내규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위한 평가팀이 구성하고 명확하게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도록 지도하고
 - 평가팀에는 부서, 공정 또는 작업별 관리감독자와 및 근로자가 평가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평가팀의 구성은 사업장의 여건에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평가팀 구성(제조업 예시)



 평가팀 구성(건설업 예시)



· 착안사항 ·

<사전준비와 관련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경영방침 수립 관련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사업주 ·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중대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유해 · 위험 방지 조치 관련

(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실시

➡ 산안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안전조치 · 보건조치)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 보건에 관한 조치 실시

➡ 산안법 제38조 및 제39조

(유해 ·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사업주 ·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에 1회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실시

➡ 중대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3호

자원 배정 관련

(안전보건 예산 확보) 사업주 · 경영책임자 등은 매년 안전보건 관련 인력 · 시설 · 장비 등을 갖출 수 있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 관리 체계 마련

➡ 중대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4호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 관련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등을 지정 · 채용하고 역할 부여

➡ 산안법 제2장 제1절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사업주 ·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가 안전보건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조치


- 사업주 · 경영책임자등은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보건의를 배치* 하고,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시간을 보장 ➡ 중대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6호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정한 수 이상으로 배치

 위험성평가 교육 관련

지도내용

- 교육은 ①위험성평가 실시 전 조직 구성원에 대한 교육(실시 전 교육)과 ②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교육(실시 후 교육)으로 나누어지며, 이 단계에서는 ①실시 전 교육을 의미합니다.
 - ※ 실시 후 교육은 이 장의 5단계에서 설명합니다.
-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참여 근로자 등에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를 담당하는 조직 구성원(평가팀원)들에게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거나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의 중요성과 실시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합니다.
 - 다만,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 위험성평가 교육

구분	종류	대상	시간	교육 기관
고시에 따른 지원교육	사업주 교육	사업주 또는 단위사업장 책임자	(대면) 2시간	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사업주	(대면) 4시간	안전보건공단
	평가담당자 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 등	(대면) 16시간	민간교육기관
	전문가 양성 교육	희망자	(대면) 18시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일반교육	위험성평가 제도의 이해(기초교육)	희망자	(온라인) 2시간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위험성평가 전문과정(이론편)	희망자	(온라인) 5시간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위험성 수준과 그 판단 기준 등의 설정

지도내용

- 유해·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여 그 기준을 미리 정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미리 정하는 단계입니다.
-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조합하여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하고 있는 경우
 - 빈도·강도법을 계속 활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내실있는 평가를 위해 가능성과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조언합니다.
- 빈도와 강도의 산정을 어려워하는 사업장의 경우
 - 고시 개정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방법을 안내합니다. 다만 위험성 3단계(또는 5단계) 판단법을 우선적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은 사업장에 따라 적절하게 조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 ①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 ② 체크리스트법(유해·위험요인이 극히 적은 사업장의 경우)
 - ③ 핵심요인기술법(단순·단기작업, 유지·보수작업의 경우)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선택되면 그에 맞는 위험성 수준과 그 판단 기준을 실시규정에 포함시키거나 위험성평가 실시 전에 정해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또한 사전에 설정되도록 합니다.
 - 이때, 사업장의 실질적 재해예방을 위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은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위험성 수준과 그 판단기준 등의 설정(예시)

① <위험성 수준 설정>			② <판단기준 설정>	③ <허용 가능한 기준>	
<2단계>	<3단계>	<5단계>			
“0”	“상”	“매우높음”	사망 또는 영구장애를 일으키는 재해	“허용 불가능”	▶ 감소대책 수립
		“높음”	6개월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		
	“중”	“중간”	3일~6개월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		
“하”		“낮음”	3일 미만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	“허용 가능”	▶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 상태유지
	“매우낮음”	휴업을 요하지 않는 부상이나 질병			

안전보건정보 사전 조사 관련

지도내용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적절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보건정보(자료)를 찾고 분석하여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정보*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합니다.

※ 예) ① 재해사례(산업재해조사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요인 파악, 결정 및 개선대책 수립 등에 활용
 ② 작업표준, 작업절차서 → 평가 대상을 분류하는 과정, 유해·위험요인 파악에 활용

*** 활용 가능한 안전보건정보**

- ① 작업표준, 작업절차서 등의 정보
- ②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유해·위험요인 관련 정보
- ③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흐름도 등과 작업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④ 도급사업장이 있는 경우 혼재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상황에 관한 정보
- ⑤ 사업장 및 동종·유사 사업장 재해사례, 재해통계에 관한 정보
- ⑥ 작업환경측정 자료,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등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사전조사표(예시)

작업(공정)		안전보건정보				생산품													
원재료		(업종명 : ○○○ 제조업)				근로자수	명												
공정(직업)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그 밖의 유해위험정보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취급량/일	취급시간														
						○ 작업표준, 작업절차에 관한 정보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공정흐름과 작업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 도급(일부, 전부 또는 혼재작업) (유□, 무□)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 안전작업허가증 필요작업 유무(유□, 무□) ○ 중량물 인력취급시 단위중량(kg) 및 취급형태 (들기 □, 밀기 □, 끌기 □) ○ 작업환경측정 측정유무(측정□, 미측정□, 해당무□) ○ 근로자 건강진단 유무 (유□, 무□) ○ 근로자 구성 및 경력특성													
						<table border="1"> <tr> <td>여성근로자</td> <td><input type="checkbox"/></td> <td>1년 미만 미숙련자</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고령근로자</td> <td><input type="checkbox"/></td> <td>비정규직 근로자</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외국인 근로자</td> <td><input type="checkbox"/></td> <td>장애근로자</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able> ○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여성근로자	<input type="checkbox"/>	1년 미만 미숙련자	<input type="checkbox"/>	고령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장애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여성근로자	<input type="checkbox"/>	1년 미만 미숙련자	<input type="checkbox"/>																
고령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장애근로자	<input type="checkbox"/>																

02

유해·위험요인 파악 (2단계)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점검표 활용 등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주요 확인 POINT

확인 사항	예	아니오	해당없음
■ 사업장 순회점검 방법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지			
■ 순회점검시 관리감독자 및 해당 작업 근로자를 포함하는지			
■ 명백한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 아차사고 및 기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지			
■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지			
■ 임시·수시·비정형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있는지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			
■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지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			
■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에 근로자가 참여하는지			



메모

위험성평가의 대상 관련

지도내용

- 평가의 대상

- 위험성평가 대상은 "업무 중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입니다.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부상 및 질병을 예상할 때는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여 기준으로 삼습니다.

- 아차사고 관련

- 아차사고 사례를 수집한 내용을 확인하고 사고의 원인이 된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누락되어 있다면 아차사고의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되도록 지도합니다.
- 아차사고 사례를 수집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 절차를 갖추도록 지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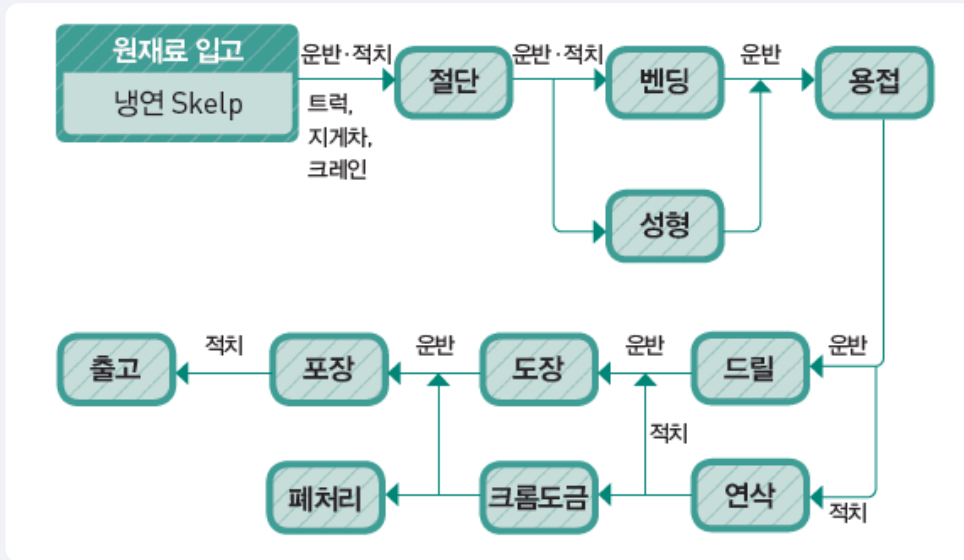
- 중대재해 발생 기록이 있는 경우

-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지체없이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 누락되어 있다면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외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안내합니다.

착안사항

- (위험성평가 대상분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작업·공정을 구분·분류합니다. 작업 분류 시 연관된 작업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 공정 흐름도에 따른 분류 예시



“위험을 찾으면 안전이 보입니다”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

지도내용

- 순회점검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과정에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은 꼭 포함되도록 지도합니다.
 - 순회점검은 공정 근로자와 관리감독자를 포함한 평가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그 외 방법의 적용 필요성은 점검결과 및 사업장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해서 조언합니다.
-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
 - ①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필수)
 - ②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 ③ 설문조사·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④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 ⑤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⑥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 누락된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 순회점검의 동선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 파악에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 지도요원이 확인한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위험성 평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착안사항

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

•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위험성평가 수행자(평가팀)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여 기계·기구 및 설비나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이 포함되어야 함

사전준비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와 질병 기록 ■ 이전에 실시한 점검 사항의 기록 ■ 유해·위험작업 또는 설비의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자는 사업장 작업에 정통할 것 ■ 측정이 필요한 경우 계측기 등을 준비 할 것 ■ 교대 작업인 경우 점검 시간대를 조정할 것 ■ 점검이후 필요한 때마다 점검자 회의를 개최할 것

•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 사업장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근로자들이 제안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

사전준비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 근로자의 제안 절차 마련 및 시행 ■ 포상이나 인센티브 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 근로자의 제안에 대해 실제 반영을 검토할 것 ■ 제안내용 및 제안에 따른 결과를 공유할 것 ■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도를 설명할 것 ■ 참여를 제한하는 관행 및 장벽의 제거

• 설문조사·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현장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직접 경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나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

사전준비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취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사전에 선정 ■ 현재 작업에 어느 정도 정통한 사람,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사람 등 현장 책임자가 바람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취조사는 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조사표를 사용할 것 ■ 특정한 사람으로 한정하지 말 것 ■ 청취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비밀유지)

착안사항

●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

- 재해 조사보고서, 건강진단, 아차사고 등 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

사전준비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회의록 또는 기록 ■ 발생한 사고나 질병의 보고서 ■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 ■ 물질안전보건자료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안전보건활동 기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행하고 있던 작업 또는 원인을 대상으로 할 것 ■ 건강진단에서는 유소견자의 작업 또는 원인을 대상으로 할 것 ■ 기존 안전보건활동에 의해 파악 및 기록된 사항을 포함 할 것

●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작업에 대하여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

사전준비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의 목록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도출 ■ 작업의 단계별로 유해·위험요인을 기재

나. 위험성과 현재의 안전·보건조치를 확인

-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방법론(접근법)은 여러 가지가 사용될 수 있지만 핵심적인 질문은 아래와 같음
 - 유해·위험요인은 무엇인가?
 -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어떻게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지는가?
- 유해·위험요인 파악의 목적은 누군가가 어떤 상황과 사건으로 인하여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기술하고 목록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 단, 사용하는 기법, 방법(예, 체크리스트법 등)에 따라 다르게 기술하고 목록화될 수 있음
- 또한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확인함으로써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결정할 수 있음

착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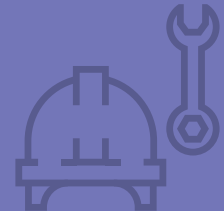
※ 기계류(수직형 드릴) 유해·위험요인 파악의 예 (ISO/TR 14121-2 Annex A 참조)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	위험구역	시나리오		
		유해·위험요인	위험한 상황	위험한 사건
공구교환	작업구역	날카로운 공구에 의한 손의 베임	공구를 장착 및 고정하는 작업	불시 기동으로 인한 회전하는 공구와 접촉

다. 유해·위험요인에 포함 가능한 요인

- 사용기계·기구, 사용물질 자체의 위험요인
- 소음, 분진, 유해물질 등 작업환경과 관련된 유해요인
- 작업방법 및 작업 중 예상되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
- 작업 장소 간 화물이동(운반)의 위험요인
- 보수 및 수리 등 비정형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
- 안전보건관련 조직, 교육, 검사 등 관리적 결함사항 등

03 위험성 결정 (3단계)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을 사업장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과 비교하여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위험성 결정] 주요 확인 POINT

확인 사항	예	아니오	해당없음
■ 위험성 결정이 적정한지 여부 (ex) 사고발생 가능성이 명백함에도 위험성 결정이 낮게 결정되었는지 등			
■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잘못 설정했는지 (ex)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에서 실제 사고나 아차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등			
■ 위험성 결정 단계에 근로자가 참여했는지			



메모

위험성 수준의 결정 관련

지도내용

- 위험성의 수준을 낮게 판단한 경우
 -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지양하고, 사업장에서 사전에 정해놓은 기준과 현재의 상태 등을 비교·검토하여 잘못 판단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합니다.
 - 그 이유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사고 발생 가능성이 명백함에도 위험성의 수준이 낮게 결정된 경우
 - ✓ 보호(통제)조치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 ✓ 사고 발생에 의한 부상의 중대성(심각도)을 낮게 판단한 경우
 - ✓ 사전에 정한 기준과 다르게 판단한 경우 등
 - 위험성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강도법과 같이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조합하는 방법도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수용 가능하다면 이를 설명하고 가능성과 중대성의 척도를 고려하여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법령에 따른 조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조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성의 수준을 낮게 판단하거나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으로 결정하고 별도의 조치가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령 등에서 정한 조치를 설명하고 위험성의 수준을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등을 지도합니다.

착안사항

가.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할 때 유의사항

- ①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 ②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 ③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할 것
- ④ 기계·기구, 설비,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 ⑤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 ⑥ 산업재해 현황, 근로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험성 유무 또는 수준을 추정

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노출되는 사람들
- 노출 유형, 빈도 및 시간
- 노출과 그 결과의 관계
- 인적요인
- 보호조치의 적절성
- 보호조치의 무효화 또는 회피 가능성
- 보호조치의 유지 능력
- 사용정보

다.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평가 방법

-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특징이 반영된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방법(CHARM)을 사용할 수 있음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서도 해당 방법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음
-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방법(CHARM)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참고하세요.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결정 관련

지도내용

- 허용 가능 여부가 잘못 결정된 경우

-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불가능하지만,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파악하고 개선토록 지도합니다.

※ 예시)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서 특정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상”으로 판단하였다면,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별도의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허용 가능한 수준의 요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너무 높게 설정한 경우

-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이 너무 높게 되면 현장의 위험성이 높아져 안전하지 않게 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조치,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근로자의 의견에 따라 합리적으로 유지되도록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예시)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서 휴업을 요하는 부상 등을 당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중”으로 설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도 “중”으로 정하였다면, 부상이 예상됨에도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것임



· 착안사항 ·

위험성 수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의 기준은 어떻게?

“법적인 기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과 그 크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기준과 함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사고가 발생한다면 얼마만큼의 피해가 일어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함
 - 법령에서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나 설비에 대해서는 유사한 적용사례가 있는지, 국내나 해외의 기술기준이 있는지를 찾아보면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음 (HSE, TÜV 등 국제기관의 허용가능한 위험성 기준 자료 참조 가능)
- 위험성의 수준을 높게 분류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 중대재해나 건강장해가 일어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
 - 많은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동종업계 등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연관이 있는 유해·위험요인 등
- 위와 같이 위험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 시행하여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아래로 낮추어야 함
- 사업주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그렇게 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위험성의 수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은 법령 개정, 사업장 환경, 기술발전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꼭 알고 있어야 함

위험성평가의 방법 관련

지도내용

- 위험성평가의 방법으로는 종래에 사용하던 빈도·강도법과 이번에 새로운 위험성평가 방법으로 도입된 ①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②체크리스트법, ③핵심요인 기술법 등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은 중소 사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을 우선 권하지만 유해·위험요인이 극히 적은 사업장은 체크리스트법을 사용할 수 있고, 단순·단기작업, 유지보수 작업은 핵심요인 기술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따라 적절하게 조합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기존에 빈도·강도법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적절하게 실시해 왔다면 단순히 쉽고 간단하다는 이유만으로 방법을 변경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빈도·강도법은 위험성 수준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 **착안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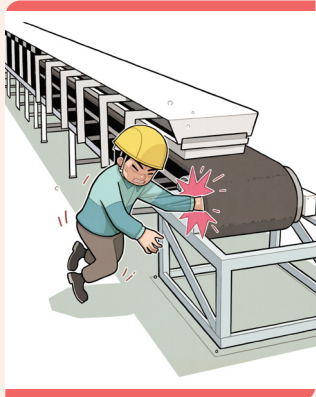
가.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 위험성 결정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하고 판단할 때,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고·중·저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TIP · **위험수준 3단계 판단법 안내**

-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 ② 위험성 결정 →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



'상'·'중'·'하' 중 어디에 해당하는 위험성인지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



안전조치 실시



착안사항

나. 체크리스트법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현재 조치가 적절한지 아닌지 “○” 또는 “×”으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 목록에 제시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과 현재 조치사항을 종합하여, 그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체크리스트가 지나치게 단순하게 작성되었거나, 주관적으로 작성된 경우, 중요한 유해·위험요인을 빠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예] 이 프레스는 위험한가?(×)

→ 이 프레스는 작업 시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TIP

체크리스트 방법 안내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 결정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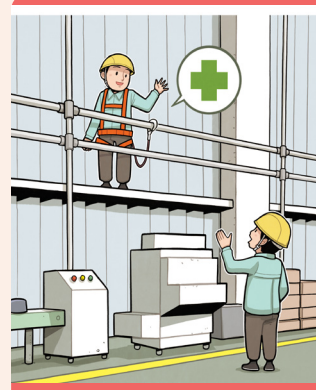
체크리스트 항목 작성



각 항목별로 허용 가능한 수준 여부 판단



안전조치 실시



· 착안사항 ·

다. 핵심요인 기술법

-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위험성 수준이 높지않고, 유해·위험요인이 많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제시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유해·위험요인은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지?” “현재 시행 중인 안전조치는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의 질문에 단계적으로 답변하며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TIP

핵심요인 기술법 안내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 결정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①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가?
↓
②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
↓
파악

①현재 시행중인 조치는 무엇인가?
↓
②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
평가·결정

안전조치 실시



착안사항

라. 빈도·강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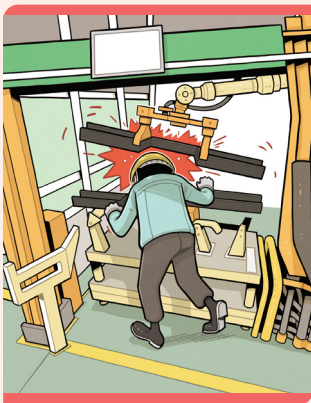
- 빈도·강도법은 우리 사업장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수준)를 산출해 보고, 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TIP

빈도·강도법 안내

-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
- ② 위험성 결정 →
-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공정·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5×4” 또는 “3×3” 등의 평가척도를 이용해 위험성의 크기를 구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

위험성 평가척도, 관례

- 위험성 평가척도(5×4) 또는 (3×3) 등 평가척도를 이용해 위험성의 크기를 구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
- 위험성 평가척도(5×4) 또는 (3×3) 등 평가척도를 이용해 위험성의 크기를 구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

위험성	중대성	빈도	합계	수준
위험성 1	위험성 1	빈도 1	합계 1	수준 1
위험성 2	위험성 2	빈도 2	합계 2	수준 2
위험성 3	위험성 3	빈도 3	합계 3	수준 3
위험성 4	위험성 4	빈도 4	합계 4	수준 4
위험성 5	위험성 5	빈도 5	합계 5	수준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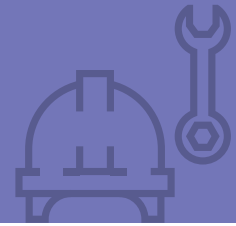
안전조치 실시



※ 기타의 방법

- 이외에도 작업안전 분석(JSA) 방법,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방법,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방법, 작업자 실수 분석(HEA) 방법,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방법, 이상위험도 분석(FMECA) 방법, 결함 수 분석(FTA) 방법, 사건 수 분석(ETA) 방법, 원인결과 분석(CCA) 방법 등이 있습니다.

0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4단계)



위험성평가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단계



[위험성 결정] 주요 확인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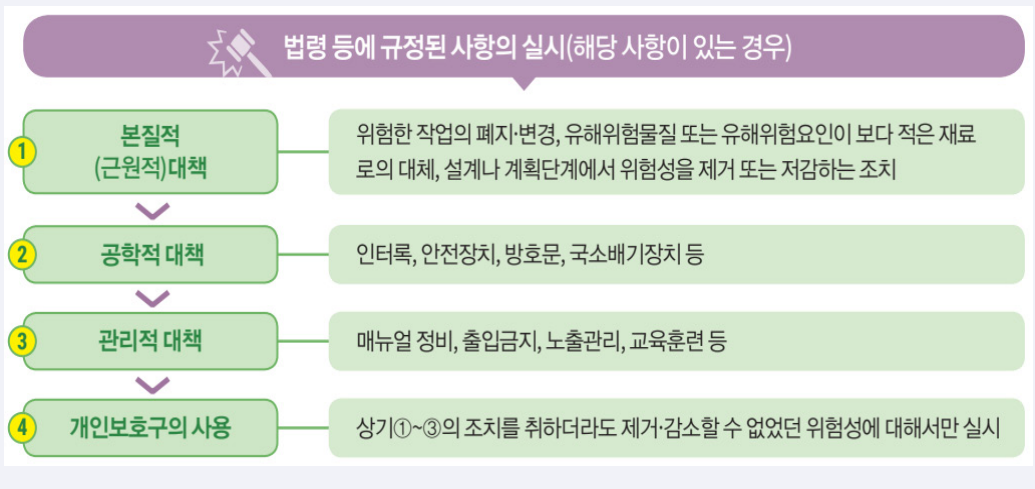
확인 사항	예	아니오	해당없음
■ 위험성 결정 결과 위험성이 높은 순서대로 감소대책을 수립·이행하는지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이 본질적 방안, 공학적 방안, 관리적 방안 등 순서로 고려되는지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였는지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이후 개선대책 이행 기간 설정 및 이행 기한이 적절한지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담당자를 설정하였는지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이후 위험성의 수준을 확인하는지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이후 위험성의 수준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이행했는지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이후 남아있는 위험에 대해 근로자에게 주지했는지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근로자가 참여하는지			



메모

지도내용

-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하도록 지도합니다.
 -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 중 ①중대재해 발생 위험, ②다수의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거나 질병발생 위험, ③동종업종 사업장의 사고발생 또는 질병발생 사례 등이 있는 항목의 개선대책은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가장 빨리 개선하여야 함.
-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 수립 시에는,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방법을 최우선으로 검토한 다음에,
 - ① 제거·대체(본질적 대책) → ② 공학적 대책 → ③ 관리적 대책 →
 - ④ 개인보호구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합니다.
- 감소대책 실행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 수준이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 재확인하고 조치토록 지도합니다.



착안사항

재해유형별 예방조치 방법

1) 떨어짐

- **위험요인:**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

* 사람이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고려

- **예방 방안:** 가능한 근로자의 이동 및 작업 동선에 대한 분석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한 후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① 제거·대체

- 설계·시공 시 개구부 최소화, 작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한 추락 위험장소 최소화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관련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 여부 등도 확인

② 통제

- (공학적)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추락방호망(Safety net) 등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 강관비계 아닌 시스템 비계* 사용

* 규격화된 부재(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를 안정적인 구조로 조립하여 사용하는 비계

- (관리적) 작업 전 관리감독자의 안전대 부착설비와 추락방호망 점검 및 작업자들의 안전대 착용 지시, 추락위험 표지판 설치

※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함

③ 개인 보호구

- 모든 작업자는 언제나 안전모·안전대 등 필요한 보호구 착용

· 착안사항 ·

2) 끼임

- **위험요인:**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직선운동하는 물체 사이의 끼임,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로울러 등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회전체·돌기부 등에 감기는 경우를 고려(위험기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참고)

- **예방 방안:** 기계·기구의 움직임에 대한 분석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한 후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① 제거·대체

- 끼임 위험이 없는 자동화 기계 도입 또는 작업 방법·동선 고려

② 통제

- (공학적) 기계·설비의 작업점에 센서,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기어·롤러의 말림점이나 벨트·체인 등 동력전달부에 방호덮개 설치

- (관리적) 방호조치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여부 확인, 위험기계·기구의 정비·수리 등 비정형작업 전 운전 정지, 기동스위치 잠금조치 및 표지판(조작금지) 설치(Lock Out, Tag Out), 작업허가제* 등

* 작업부서가 소관 상급부서 또는 안전부서의 허가·승인을 거쳐 작업을 실시

※ 정비 등 비정형작업의 절차 및 위험성평가 진행 여부 등 확인

③ 개인 보호구

-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작업복 착용

· 착안사항 ·

3) 화재·폭발

• 위험요인: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이나 작업

※ 화재는 가연물에 점화원이 가해져 불이 일어난 경우를 의미하고, 폭발은 건축물, 용기 내 또는 대기 중에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열, 폭발, 폭발압이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화학물질별 위험성과 관리체계는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에서 확인)

• 예방 방안: 화기 취급 작업, 인화성 물질 등 보관 및 취급 장소, 폭발 가능 공정에 대한 분석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한 후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재해방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① 제거·대체

- 화기작업 시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및 인근 가연물 제거, 건설공사 시 비가연성 자재로 대체

② 통제

- (공학적) 용접작업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설치
 - (관리적) 화재·폭발 위험 장소에서 화기작업 시 작업장 내 위험물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 수립, 화기작업 시 가스 및 분진 농도 측정 및 주기적 확인, 작업 중 화재감시인 배치
 ※ 도급사업의 여러 수급인의 작업 동선이 간섭되는 경우 등을 고려한 관리대책 마련

③ 개인 보호구

- 제전작업복 착용, 가스검지기 휴대, 방폭공구 사용

· 착안사항 ·

4) 질식

- **위험요인:** 밀폐공간 등 질식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

※ 밀폐공간

-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
-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18개 작업장소)
 - * 산소결핍 :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
 - ** 유해가스 :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

- **예방 방안:** 근로자가 산소가 부족한 상태·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장소를 우선 분석하고,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한 후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재해 방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① 제거·대체

- 설계단계부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 조성, 밀폐공간 내부의 기계·기구 제거(예 : 내부모터 → 외부모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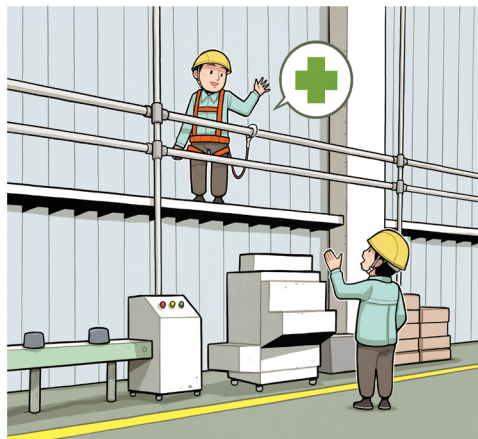
② 통제

- (공학적) 환기·배기장치 설치, 유해가스 경보기 설치
- (관리적)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안전작업허가제 도입,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작업수칙 규정, 감시인 배치
 - ※ 산소농도 등 계측기기의 정상값 확인 방법 등 교육 여부, 원료 및 반응 종류 등 공정 매뉴얼의 제공, 원료 이송 및 밸브 개폐 등 작업표준 준수 여부 등 점검

③ 개인 보호구

- 송기마스크 착용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개인보호구
건설현장 개구부	설계·시공 시 개구부 최소화	안전난간 또는 덮개 설치	'추락 위험' 표지판 설치	안전모·안전대 착용
끼임 위험 기계·기구	끼임 위험이 없는 자동화 기계 도입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Lock Out, Tag Out' 안전작업허가제 도입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작업복 착용
유해 화학물질	- 유해물질 제거 또는 저독성물질로 대체 * 예: 메탄올→에탄올	- 국소배기장치 설치 - 누출방지조치 등	- 작업절차서 준수 - 작업환경측정을 통한 노출관리	- 방독마스크, 내화학장갑, 보안경 등 착용
인화성 가스	인화성 완화* * 예: 아세틸렌→LPG	- 전기설비 방폭 조치 (점화원 관리) - 가스검지기·긴급차단장치 연동 설치 - 환기·배기장치 설치	- 작업절차서 준수 - 정비작업허가제 도입	- 제전작업복 착용 - 가스검지기 휴대 - 방폭공구 사용
밀폐공간	- 밀폐공간 내부 기계·기구 제거 * 예: 내부모터 → 외부모터	- 환기·배기장치 설치 - 유해가스 경보기 설치	- 출입금지 표지설치 - 작업허가제 도입 - 감시인 배치	- 송기마스크



05

위험성평가의 공유 (5단계)



주요 결과와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작업에서의 유해·위험요인, 그 위험성 수준, 위험성 감소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공유하는 단계



[위험성평가의 공유] 주요 확인 POINT

확인 사항	예	아니오	해당없음
■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주지하는지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실시하는지			
■ 수리·보수 등 갑자기 진행되는 비정형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을 하는지			



메모

지도내용

• **공유의 필요성**

- 위험성평가가 서류작업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유해·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인지, 그리고 효과적인 위험성 감소를 위해 근로자들이 꼭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알려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위험성평가 결과를 사업장의 여건에 맞추어 온·오프라인 게시판, 교육, TBM, 앱(APP) 또는 SNS 등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공유하도록 지도합니다.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

- 매우 위험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해당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매번 실시하고, 그 위험성을 강조할 필요성을 안내합니다.

착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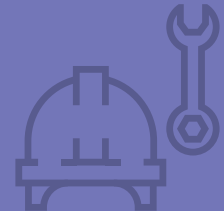
가.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공유해야 할 내용

- ①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
- ② "①"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 ③ "①"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 ④ "③"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 TBM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IV장 [참고3]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안내’를 참고하세요.

06 기록 및 보존 (6단계)



위험성평가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단계



[기록 및 보존] 주요 확인 POINT

확인 사항	예	아니오	해당없음
■ 위험성평가의 과정, 방법, 결과를 기록·보존하는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 위험성평가표			
-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 현황			
-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메모

지도내용

-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에 대해 기록하지 않은 경우

-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록물은 향후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회의 자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자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및 이후 계속되는 위험성평가 과정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 하도록 지도합니다.

*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 사업장에 보관

착안사항

기록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된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4조(기록 및 보존)

- ① 규칙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②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은 제15조에 따른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위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도 매뉴얼



Part IV

참고자료

[참고 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최초-정기-수시)(예시)

[참고 2]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최초-상시)(예시)

[참고 3]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안내

[참고 4] KRAS 사용 안내

[참고 5]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착안 사항

[참고 6] 최근 사망사고 다수 발생 12대 기인물 안내

[참고 7] 업종별 산재예방 지원사업 안내

[참고 8] 안전보건교육 체계도

[참고 9] 24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지표

[참고 10]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 동 실시규정은 사업장(현장)사정에 맞춰 수정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동 규정은 원청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맞추어 작성되어 있으므로, 하청으로서 원청과 별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절히 변형하여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최초-정기-수시평가용)(예시)

사업장명	○○산업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예시) (최초-정기-수시평가용)	담당자	검토자	근로자대표	승인자
작성일자 (개정일자)	'22.2.1. ('23.5.10.)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성 수준 5단계 판단법(매우높음-높음-보통-낮음-매우낮음)을 채택한다. - 작업기간 1개월 미만의 임시·수시·비정형 작업에 대해서는 핵심요인기술법을 활용한다. 위험성 결정 시 “낮음” 이상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한다. 이외의 사항은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따른다. 					
위험성 수준의 판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우높음: 사망 또는 영구적 장애 높음: 6개월 이상 휴업을 요하는 부상·질병 보통: 3~6개월 휴업을 요하는 부상·질병 낮음: 3개월 미만 휴업을 요하는 부상·질병 매우낮음: 휴업을 요하지 않는 부상·질병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 매우낮음(매우높음부터 낮음의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한다)					

위험성평가 실시 원칙

- ①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③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④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⑤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세부 역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성평가 총괄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 예산 편성·집행 아차사고 사례 발굴 등 지원 	관리감독자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성평가 실시 총괄 유해·위험요인 파악 지원 위험성 결정 지원 평가 참여 및 TBM 실시
참여 근로자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관련 위험성평가 참여 유해·위험요인 제보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 TBM 참여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실시규정 작성, 정보 수집 근로자 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기록·공유

세부 실시규정

평가 시기	• 최초 평가(2월 기 완료) · 수시 평가(사유 해당 시) · 정기평가(매년 2월)
평가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준비(2주) → 유해·위험요인 파악(2주) → 위험성 결정(1주)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1주)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1개월)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평가절차별 중점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전준비: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한다.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한다.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한다.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현재의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한다. ⑤ 기록·공유: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한다.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직원에 대해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실시한다.
공유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공정별 주요 주의·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공유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게시: 위험성평가 직후부터 상시 • 작업별 주의·준수사항: 수시 및 매 작업일 작업지시 시간 활용
기록 관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수시·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3년간 보관 (KRAS 활용 추후 검토)

수시평가 실시 시기

- 사업장 건설물 설치·이전·변경·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부 실행계획

착수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목적) 실시규정 확정 및 실시일정 수립
교육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목적) 담당자 교육 및 근로자 교육일정 수립
실시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목적) 절차별 참여자 확정 및 실시계획 확정
중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목적) 위험성평가 실시현황 점검
최종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목적) 유해·위험요인별 감소대책 등 확정

참고1-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최초-정기-수시평가용)(예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 사업장명: (주) ○○산업

■ 작성일자: 년 월 일

승인자	(확인)
검토자	(확인)
작성자	(확인)
최종 제·개정일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무재해 사업장
- 안전보건법규 준수 및 지속적인 위험성평가 활동
- 위험성평가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산업재해
발생 제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상시적인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승 인	
기 안	위험성평가 담당자

제 정 : (처음 만든 날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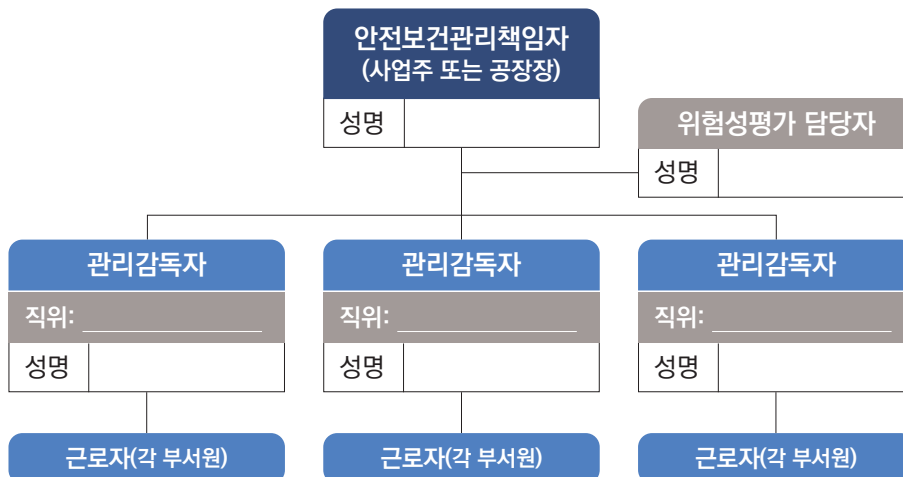
개 정 : (수정한 날짜)

제1조(목적) 이 실시규정은 우리 회사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및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적용한다.

제2조(적용) 이 실시규정은 우리 회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 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 조직의 구성은 <표 1>과 같이 한다.

<표1>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 조직 구성도



제4조(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 조직 구성원별 역할과 책임은 <표 2>와 같이 한다.

<표2>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 조직 구성도

조직	역할과 책임(권한)
<p>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p>	<p>《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총괄 관리 및 의지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 -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아차사고 사례 등 유해·위험요인 발굴 지원 •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이수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활동 독려
<p>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담당자와 겸직가능)</p>	<p>《위험성평가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숙지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p>근로자(작업자) (위험성평가담당자와 겸직가능)</p>	<p>《위험성평가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의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 출입허가절차 및 위험한 장소 인지 • 아차사고 사례의 적극적 제보
<p>위험성평가 담당자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와 겸직가능)</p>	<p>《위험성평가의 실행 관리 및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제5조(평가대상) 근로자(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 ①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 ②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

제6조(실시시기) 우리 회사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 ① 최초평가 :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 사업장의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0000년 00월 00일까지 실시한다.
- ② 정기평가 :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실시하고, 이후 매 1년마다 매년 실시한다.
 -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및 그간의 수시평가 결과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정기평가 시에는 첫째, 빠진 유해·위험요인이 없는지 살펴보고, 둘째,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셋째, 기존 위험성 감소대책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 ③ 수시평가 : 해당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제7조(실시원칙) 위험성평가 실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 ③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 ④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⑤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게시 등을 통해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내용에 포함한다.
- ⑥ 필요 시 전담직원들에게 위험성평가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추진절차) 위험성평가의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1단계 :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들을 정의한다.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한다.
 - 사업주, 위험성평가 담당자, 근로자가 모두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을 설정한다.
- ②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가장 중요한 단계로,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한다. 베테랑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 ③ 3단계 : 위험성 결정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과 현재의 조치 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을 만족하도록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조치가 모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허용할 수 있는 위험성 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 인지를 결정한다.
- ④ 4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한다.
- ⑤ 5단계 : 기록
 -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한다.

제9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우리 회사의 위험성평가 방법은 위험성 수준 5단계 판단법을 사용한다. 다만, 작업기간 1개월 미만의 임시·수시·비정형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는 핵심요인 기술법을 활용한다.

제10조(위험성의 수준 판단 기준) 우리 회사의 위험성 수준과 그 판단 기준은 사업주·위험성평가 담당자·근로자들이 모인 최초·정기 위험성평가 착수회의 등을 통해 결정한다.

제11조(근로자에 대한 공유) 우리 회사의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근로자들이 많이 다니고, 잘 볼 수 있는 곳에, 잘 볼 수 있는 방법(가독성 높은 큰 글씨, 전광판 등)으로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
- ② 우리 회사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교육 대상 근로자의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내용 포함
- ③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 위험성평가 내용 포함

제12조(근로자의 참여 방법) 우리 회사는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의 모든 과정에 근로자 1명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제13조(유의사항)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우리 회사의 유해·위험요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고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커지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감소조치 결과 당해 위험성 감소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참여자는 위험성 결정 시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강도)을 고려하여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한다.

제14조(점검 및 개선활동) ① 위험성평가의 이행에 대한 점검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및 이행 책임자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의 이행 점검 결과, 미이행 사항이나 추가적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내용은 차기(다음번) 위험성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 ① 위험성평가 기록은 출력하여 사업주에게 승인을 받는다.

②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회사 안전보건 기록 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되 3년 이상 보관한다.

③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한다.

서식 1

위험성평가 교육 결과

교육일시	20 년 월 일 : ~ :
교육장소	(교육장)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업주의 방침과 추진목표
-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준비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방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와 기록유지 방법

위험성평가 교육실시 사진 또는 교육자료 등

참석자 명단

소속/직책	성 명	서명	소속/직책	성 명	서명

서식 2

위험성평가 회의 결과

회의일시	20 년 월 일 : ~ :
회의장소	(회의실)

회의내용

- 위험성평가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의 적정성
- 위험성평가 실시에 따른 책임과 역할 부여
-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관심사항 토론 등

위험성평가 회의 사진 또는 회의자료 등

참석자 명단

소속/직책	성 명	서명	소속/직책	성 명	서명

서식 3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결과

회의일시	20 년 월 일 : ~ :
회의장소	(회의실)

회의내용

- 작업일 현재 핵심 유해·위험요인
- 핵심 유해·위험요인에 따른 근로자 준수사항·유의사항
- 최근 동종업계 재해사례 등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사진 또는 회의자료 등

참석자 명단

소속/직책	성 명	서명	소속/직책	성 명	서명

※ 동 실시규정은 사업장(현장) 사정에 맞춰 수정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동 규정은 원청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맞추어 작성되어 있으므로, 하청으로서 원청과 별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절히 변형하여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2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최초-상시평가용)(예시)

업체명 (현장명)	○○건설 △△신축공사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예시) (최초-상시용)	담당자 (공사담당자)	검토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근로자대표 (직업반장 등)	승인자 (현장소장)											
작성일자 (개정일자)	'22.2.1. ('23.5.10)																
목적	•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사망사고 제로 실현		방법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상-중-하)													
조직 및 역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현장소장)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공사담당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공중별 협력업체 소장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소 위험 제언,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평가 절차 및 방법	① 사전준비	①예정 공정표(원·하청 공사담당자 작성) 확인 및 공중(단위작업) 분류 ②동종 유사업종 재해, 아차사고 사례,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분석 → 사전에 주로 살펴볼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검토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①노사 합동 사업장 순회점검, ②근로자 제안제도(제안함·TBM시 건의 등) ③아차사고 제보사례, ④안전보건공단 공중별 사망사고 핵심위험요인(SIF)표 등을 활용하여 예정 공정표에 따른 공중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사전준비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유해·위험요인을 추가적으로 발굴															
	③ 위험성 결정	①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전체 위험성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관리할 유해·위험요인을 선정 ②근로자의 경험과 재해사례 등을 반영하여 위험성 결정 ③ '상'과 '중'등급은 중점관리, '하'등급은 일상 관리	<table border="1"> <thead> <tr> <th>위험성 수준</th> <th>판단 기준</th> <th>허용 가능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상</td> <td>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날 수 있는 위험</td> <td>허용 불가능</td> </tr> <tr> <td>중</td> <td>사고 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 험 (아차사고 포함)</td> <td>허용 가능</td> </tr> <tr> <td>하</td> <td>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td> <td>허용 가능</td> </tr> </tbody> </table>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허용 가능 여부	상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날 수 있는 위험	허용 불가능	중	사고 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 험 (아차사고 포함)	허용 가능	하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허용 가능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허용 가능 여부														
	상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날 수 있는 위험	허용 불가능														
	중	사고 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 험 (아차사고 포함)	허용 가능														
하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허용 가능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①실천가능한 위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누가 언제까지 실행할지 계획 수립 ①-1. '상' 등급 대책: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①-2. '중' 등급 대책: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위험저감 교육 등 ①-3 '하'등급 대책: 현재의 위험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관리 수행 * 개인보호구는 위험성 감소의 근본적 대책은 아니며, 보충적으로 활용																
⑤ 평가결과 공유·교육	①[TBM]일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 위험성평가 결과와 근로자 준수사항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을 철저히 공유 ②[공유] 현장 출입구에 설치된 안전보건 현황판에 매월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 (SNS 공유 병행 가능) ③[교육]매월 정기안전보건교육, 수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⑥ 감소대책 이행·확인	①공중별 공사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시 결과를 확인하고 공유 ②주 단위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상시평가 시기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평가) 공사 실 착공 후 1개월 이내 착수 • (상시평가) 최초평가 후 매월 1회 이상 주기적 실시 <p>* 최초·주기적 위험성평가 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이나 공정 변화로 인해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생기거나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변동되었다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p>		
	실시 주기	참여자	세부 내용
	<p>월(月) 1회</p> <p>매월 ○째주 △요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소장 • 평가담당자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현장 근로자 	<p style="text-align: center;">위험성평가 실시 (위험파악·대책마련 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노·사합동 순회점검) 노·사 합동 순회점검을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한다. 이때,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신규/변동 유해·위험요인에 유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회점검 이전에 아차사고 사례 및 근로자 제안을 취합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즉시 대응하고, 순회점검 시 중점 점검한다. ② (아차사고 검토)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아차사고 사례를 검토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다. ③ (근로자 제안) 근로자들의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상황 제안제도를 활용하여 지난 한 달 제보받은 사항들을 점검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다. ④ (예정공정표 활용) 정해진 위험성평가 주기 내에 예정된 작업공정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별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 및 이행계획을 마련한다.
	<p>주(週)</p> <p>매주 □요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소장 • 평가담당자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p style="text-align: center;">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이행상황 점검 (원·하청 합동 안전 점검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1주간 공정·작업별 핵심 유해·위험요인과 근로자들의 주의·준수사항에 대해 공유한다. • 지난 1주간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변동이 없는지 여부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현황을 확인한다. • 신규/변동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위험성 결정을 실시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한다.
<p>일(日)</p> <p>매일 작업 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근로자 (작업반장) 	<p style="text-align: center;">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활용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작업일마다 TBM을 통해 공정·작업별 핵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주의·준수사항을 공유/전파한다.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사전에 전체 TBM 담당자에게 예정된 작업별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주의·준수사항 등 TBM 내용을 전파한다. 	
기록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기록은 별첨 양식을 출력하여 기록하며 매월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의 승인을 받는다. • 승인된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현장의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라 공사 종료 후 3년 간 보관한다. 		

* 위 실시규정은 누리집에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 사업소개 > 건설안전 > 건설안전자료실)

참고2-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최초-상시평가용)(예시)

※ 해당 자료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9조 (사전준비)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예시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새롭게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 사업장명: (주) ○○ 건설 / □□ 신축공사

■ 작성일자: 년 월 일

승인자(현장소장)	(확인)
검토자	(확인)
작성자	(확인)
최종 제·개정일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무재해 사업장
- 안전보건법규 준수 및 지속적인 위험성평가 활동
- 위험성평가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산업재해
발생 제로

위험성평가
노·사 협력

개선대책
100% 이행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승 인	
기 안	위험성평가 담당자

제 정 : (처음 만든 날짜)

개 정 : (수정한 날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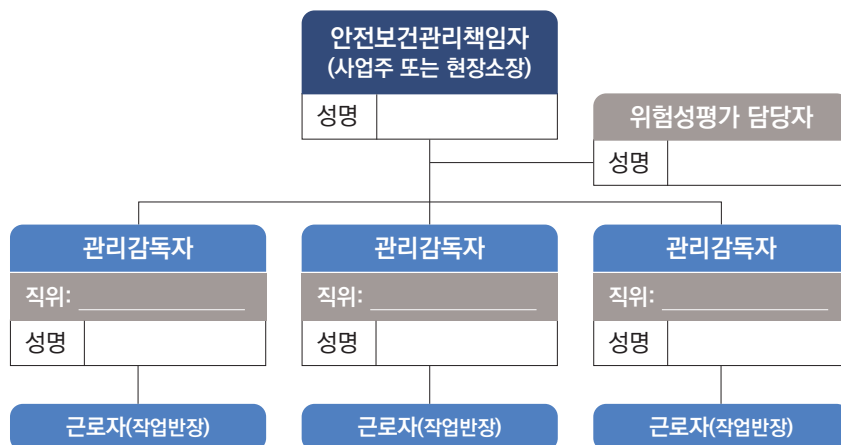
제1조(목적) 이 실시규정은 우리 회사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및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적용한다.

제2조(적용) 이 실시규정은 우리 현장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가시설 및 건설기계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위험성평가 업무 체계) 위험성평가 업무 체계는 다음과 같이 ‘위험성평가 → 협의체회의(위험성평가 회의) → 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활동 → 이행 확인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제4조(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 조직의 구성은 <표 1>과 같이 한다.

<표1>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 조직 구성도



제5조(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 조직 구성원별 역할과 책임은 <표 2>와 같이 한다.

<표2>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비 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현장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의 위험성평가 업무를 총괄 개선방안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종사자 의견 청취 반영 여부 확인) 협력회사와 협의된 개선방안의 실행 여부 확인 성과측정 실시 및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 반영(매년 실시) 	-
관리감독자 (공사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회사에서 작성한 위험성평가표의 위험요인 누락 여부 검토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반영)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 적합성 여부 검토/보완 관리대상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현업에 반영 및 실행 확인 비정상작업(비일상 작업)에 대한 파악 및 확인 후 협력회사에 위험성평가 작성 지시 및 안전관리자에 공유 	주요공정 관리감독자 반드시 참여
안전보건 관리자 (위험성 평가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담당/팀장으로부터 검토된 위험성평가표를 최종 검토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반영) 회의 시 논의해야 할 고위험 관리대상 작업 선정 협력회사와 협의된 개선방안의 실행 여부 확인 최종 승인된 위험성평가표를 협력회사 및 공사담당에게 피드백 	안전관리자 미배치 현장은 관리감독자 중 담당자 지정
협력업체 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고등급 위험요인 파악 (해당 공정의 작업반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 수립 고위험등급에 대한 개선방안을 공사담당/팀장과 협의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현업에 반영 	주요공종 협력업체 반드시 참여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 대책 이행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위험한 장소 출입 시 출입허가절차 준수 	작업반장이 근로자 의견 취합

*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인력의 사정을 감안하여 1인 2역의 업무분담을 할 수 있다.

제6조(평가대상) 근로자(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 ① 현장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가설기자재, 건설재료 포함)
- ② 현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 ⑤ 현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

제7조(실시시기) 우리 현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 ① 최초평가 :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 사업장의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0000년 00월 00일(현장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실시한다. 다만, 공사별 또는 해당 공사의 단위작업 공사종류별로 분리하여 공사개시 전에 실시할 수 있다.
- ② 상시평가 : 최초평가 후 현장의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주기를 정하여 상시평가를 시행한다.
 - 월2회(위험성평가) → 주간(이행상황 논의·점검) → 일간(TBM 공유)

상시 평가 세부 절차

- ‘월(月) → 주(週) → 일(日)’ 단위의 구조화된 단계적 위험성 관리

월(月)

위험 파악 · 대책 마련

▶ (참석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협력업체 소장, 협력업체 관리감독자(작업반장) 등 현장 근로자

▶ (논의사항)

- (노·사합동 순회점검) 노·사합동 순회점검을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월간 작업일정과 관련된 신규/변동 유해·위험요인에 유의, 아차사고 사례 및 근로자 제안을 미리 취합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순회점검 시 중점 점검
- (아차사고 검토) 월간 작업일정과 관련된 아차사고 사례를 검토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
- (근로자 제안) 근로자들의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상황 제언제도를 활용하여 지난 한 달 제보받은 사항들을 점검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
- (월간 예정공정표) 정해진 위험성평가 주기 내에 예정된 작업공정 확인
- (위험성평가) 파악한 유해·위험요인별 ①위험성 결정, ②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계획 수립(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이행할지 계획)

주(週)

원·하청 합동 안전 점검회의

▶ (참석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협력업체 소장 등
※ 가급적 기존 주 단위 공정회의 등을 활용

▶ (논의사항)

- 주간 공정·작업별 핵심 유해·위험요인과 주의·준수사항 공유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변동 여부 점검 및 감소대책 이행현황 점검
- 신규/변동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 및 감소대책 마련

일(日)

TBM 활용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한 공유·주지 :

- 매 작업일마다 TBM을 통해 위험성평가 및 이행 확인 점검 결과에 따른 근로자 준수 사항과 주의 사항을 공유(SNS 오픈채팅방 활용 병행)
- 안전관리자는 사전에 전체 TBM 담당자에게 예정된 작업별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주의·준수사항 등 TBM 내용을 전파한다.

제8조(실시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 운영체제를 구축한다.
- ③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 근로자와 함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한다.
- ④ 위험성평가의 전(全)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⑤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 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회의를 실시한다.(협의체회의와 병행 가능)
- ⑦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게시 등을 통해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내용에 포함한다.
- ⑧ 필요 시 전담직원들에게 위험성평가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제9조(추진절차) 위험성평가의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1단계 : 사전준비[평가 대상 작업(공정)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 들을 정의한다.

※ 예정공정표 : 공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종(작업) 선정

등 별	공정	10월4주차				11월1주차				11월2주차				비고				
		29 일	30 일	31 일	1 화	2 수	3 목	4 금	5 토	6 일	7 월	8 화	9 수		10 목	11 금	12 토	13 일
201동	형틀																	
	철근																	
202동	형틀																	
	타설																	
203동	형틀																	
	타설																	
주차장	형틀																	
	타설																	
E-1	형틀																	
	타설																	
주차장	형틀																	
	타설																	
F	형틀																	
	타설																	
E-2	형틀																	
	타설																	
E	형틀																	
	타설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한다.
- 사업주, 위험성평가 담당자, 근로자가 모두 함께 위험성의 수준과 판단하는 기준 및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설정한다.

②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도출)

- 가장 중요한 단계로,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한다. 베테랑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3단계 : 위험성 결정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과 현재의 조치 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을 만족하도록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조치가 모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허용할 수 있는 위험성 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 인지를 결정한다.

*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위험성 수준 3단계(상·중·하)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등 간편한 방법 활용 권장

④ 4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한다.

⑤ 5단계 : 기록, 공유 및 교육

-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알리고 해당 작업 근로자 등 관계자들에게 교육한다.

제10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우리 현장의 위험성평가 방법은 위험성 수준 3단계(상·중·하) 판단법을 사용한다. 다만, 작업기간 1개월 미만의 임시·수시·비정형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는 체크리스트법을 활용한다.

제11조(위험성의 수준 판단 기준) 우리 현장의 위험성 수준과 그 판단 기준은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위험성평가 담당자·협력업체 소장, 근로자 대표들이 모인 최초 위험성평가 착수회의 등을 통해 결정한다.

제12조(위험성평가 회의 및 주지) 우리 현장은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회의를 통해 위험 등급을 분류를 협의하여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근로자에게 공유한다.

※ 위험성평가 회의 : 위험등급 분류 등 협의 및 피드백

1. 전회 협의사항 Review

- ① 전회 상등급 위험요인 대책 적용여부, 점검결과 확인 (조치자, 점검자)
- ② 대책 미 적용시 원인 파악. 시정조치
 - 원인이 무엇인가 파악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2. 금회 협의사항

- ① 금회 상등급 위험요인 설명
 - 등급결정의 적절성
 - 상등급 위험요인 추가 또는 삭제
- ② 관리대책 협의
- ③ 조치기한 및 조치담당자 결정

3. 회의록 작성·활용

- ① 회의시 회의내용을 수기로 작성
- ② 위험성 평가등록부 수정작성에 활용

회의록	
회의일시	회의장소
안건	
참석자	
회의내용 요약	
전회 협의사항 Review	
금회 협의사항	

제13조(근로자에 대한 공유) 우리 현장의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근로자들이 많이 다니고, 잘 볼 수 있는 곳에, 잘 볼 수 있는 방법(가독성 높은 큰 글씨, 전광판 등)으로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
- ② 우리 현장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교육 대상 근로자의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내용 포함
- ③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시 위험성평가 내용 포함

제14조(근로자의 참여 방법) 우리 현장은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근로자 (작업반장 포함) 1명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제15조(유의사항)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우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들이 산업안전 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

참고 3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안내**

1. TBM(Tool Box Meeting) 정의

- 작업 현장 근처에서 작업 전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직장, 팀장 등)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작업의 내용과 안전 작업 절차 등에 대해 서로 확인 및 의논하는 활동을 약칭하는 것입니다.
 - 국내에서는 안전 브리핑,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안전 조회, 위험예지 훈련으로, 해외에서는 Tool Box Talks, Tool Box Safety training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부업종, 보유설비 등 사업장 정보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 TBM의 이러한 성격을 고려하여, TBM 실행 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TBM에 관한 Q&A

- ① **똑같은 내용을 매일 반복해서 시간 낭비다?**
 - ⇒ 매일 반복적인 전달은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 인지 및 감소대책을 숙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 ② **적극적으로 TBM에 참여하지 않는 수동적인 근로자들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
 - ⇒ 안전보건지식이 풍부하고 통솔력이 뛰어난 리더를 정하여 TBM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 ③ **위험성평가 내용을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어렵다?**
 - ⇒ 일방적인 전달체계가 아닌, TBM 리더를 중심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TBM 단계별 활동 요약



TBM은 정해진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각 기업과 현장의 작업내용과 공정의 특성을 고려해적합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만, TBM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사후 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 아래 TBM을 실시하는 단계별 예시를 참고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TBM을 실시할 것을 권합니다.

① TBM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작업·공정별로 위험성평가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 TBM은 모든 작업자가 작업 전 당해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과 안전조치를 이해할 수 있는 필수적인 활동으로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TBM의 핵심 전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② TBM 실행 과정에서 핵심은 작업내용에 대한 중점 위험요인과 대책이 공유되는 것입니다.

- TBM은 작업 전 위험성평가에서 파악된 위험 이외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 참석자 간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칭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작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또한 작업자가 TBM의 전달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③ TBM 환류 조치는 제기된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결과를 작업자에 피드백하고,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TBM 단계별 활동 내용 요약

단 계	내 용
1. TBM 사전 준비	①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 실시
	② 최근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내용 확인
	③ 작업 현황 파악 ① 작업 물량, ② 작업 범위, ③ 작업내용 ④ 필요한 보호구
	④ TBM 전달자료 작성 및 내용 숙지 ① 위험성평가 결과, ② 사고보고서, ③ 안전작업 지침 및 규정
2. TBM 실행 과정	① 작업자 건강 상태 확인 * 과도한 음주, 37℃ 이상 체온, 약물 복용 여부 등 이상 유무
	② 작업내용 / 위험요인 / 안전 작업절차 / 대책 공유·전달 ① 최근 작업장 사고사례 공유 ②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분위기로 작업자의 발표 적극 권장 ③ 다양한 매체, 방법(스마트폰, App 등)으로 전달력 제고
	③ 작업자가 TBM 내용 숙지하였는지 확인 ① 중점(One point) 위험요인과 대책 숙지 여부 ② 외국인 포함 시 통·번역 등 효과적인 전달 방안 마련 * 지적하거나 확인할 사항을 작업자가 구호로 복창할 수 있음
	④ 위험요인, 불안정한 상태 발견 시 행동 요령 확인 ① 멈춘다(Stop) → ② 확인한다(Look) → ③ 평가한다(Assess) → ④ 관리한다(Manage)
3. TBM 환류 조치	① 작업자의 불만, 질문, 제안사항 검토
	② TBM 결과의 충실한 기록·보관
	③ 관련 조치 결과 피드백

3. TBM 관련 자료 안내

제목	자료 소개	자료 위치
<p style="text-align: center;">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 (TBM: Tool Box Meeting) (발행: '23.2월)</p> <p style="text-align: center;"><small>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에 답이 있다"</small></p> <p style="text-align: center;">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 (TBM: Tool Box Meeting) <small>- 제조업 12개 고위험 기인물 자율점검표 포함 -</small></p> <p style="text-align: center;"><small>2023. 2.</small></p>  <p style="text-align: center;"><small>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연구원</small></p>	<p style="text-align: center;">현장에서 TBM을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가 작업자, 관리자 등 종사자에게 잘 전달되도록 TBM 단계별 활동 내용과 국내 기업 우수사례를 포함하여 설명하는 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 > 안심일터</p> <p style="text-align: center;">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가이드 QR</p> 
<p style="text-align: center;">건설현장 TBM 실천 가이드 (발행: '23.3월)</p> <p style="text-align: center;"><small>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에 답이 있다"</small></p> <p style="text-align: center;">건설현장 TBM 실천 가이드 <small>2023. 3.</small></p>  <p style="text-align: center;"><small>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연구원</small></p>	<p style="text-align: center;">건설현장에서 효율적으로 TBM의 실천을 위해 실제 활동 동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사례와 활동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 > 안심일터</p> <p style="text-align: center;">건설현장 TBM 실천 가이드 QR</p> 

참고 4 KRAS 사용 안내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소개

- 「위험성평가」제도와「산재예방요율제」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을 구축·운영 중(13.1.1.~)
- * (주소) 인터넷 웹기반으로 <http://kras.kosha.or.kr>에서 제공
- 사업주는 시스템을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여 그 결과를 출력할 수 있으며,
- 위험성평가 컨설팅, 인정심사 및 교육 신청 등을 신청 가능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화면

KRAS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www.kras.kosha.or.kr)

위험성평가 실시 | 인정심사 신청 | 교육신청 | 컨설팅 신청 | 계시판

위험성평가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입니다.

1 / 2 < || >

Q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SEARCH**

회원가입 | 아이디 찾기 | 비밀번호 찾기

위험성평가 실시

- 빈도-강도법
- 체크리스트법
- 위험성수준3단계판단법
- 핵심요인기술법(OPS)

위험성평가 지원

- 자료실
- 컨설팅 신청
- 인정심사 신청
- 평가담당자 교육 신청

KRAS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www.kras.kosha.or.kr)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지역별 담당자 및 문의처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주)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중기로 400(성안동) | 대표전화 : 052-7030-500 | 1644-4544

Copyright © 2014 KOSHA ALL Right Reserved. Family Site 바로가기

참고 5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의 안전조치 시 착안 사항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이란?

- (3대 사고유형) 전체 중대재해의 65.4%를 차지하는 ①추락(41.6%), ②끼임(14.0%), ③부딪힘(9.8%) 사고를 말합니다.
- (8대 위험요인) 3대 사고유형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추락}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 LOTO(점검·수리 시 전원잠금 및 표지부착), ^{부딪힘}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을 말합니다.

사고유형별 안전조치 착안사항

추락		
위험요인	항목 (관련근거)	착안 사항
공통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 구성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등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 ■ 중간난간대는 중간에 균등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난간대 간격 60cm 이내 ■ 가장 취약한 지점 및 방향으로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구조
	출입금지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울타리 등 설치하는 등 출입금지 조치
	계단의 난간 (제3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추락의 방지 (제4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 설치 ■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착용 등의 조치
	개구부 등 방호조치 (제4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 난간 등 설치 ■ 난간 등의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 해체 시 추락 방호망 설치(추락방호방 설치 곤란 시 안전대 착용 등)
	안전대 부착설비 등 (제4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는 부착설비 등을 설치 ■ 지지로프 등은 처짐 또는 풀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사업주는 안전대 및 부착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 전 점검
지붕	지붕 위에서 위험방지 (제45, 4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진입을 위한 승강설비 설치 및 안전성 확인 ■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지붕 위 작업 시 30cm 이상 작업통로용 발판 설치 및 채광창 (Sun-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 ■ 작업 근로자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및 관리감독 실시 ■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눈, 비 및 강풍 등이 예보되면 작업 중지

추락		
위험요인	항목 (관련근거)	착안 사항
사다리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적으로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설치 시 발판과 벽 사이 간격 15cm 이상,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하고 폭 30cm 이상 등의 견고한 구조로 할 것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작업 근로자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및 관리감독 실시 빼기, 결속, 전도방지조치 등 넘어짐 방지조치
비 계	작업발판의 구조 (제5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계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폭 40cm, 틈 간격 3cm 이하 유지 등의 기준 등에 맞는 작업발판 설치 작업발판을 견고히 고정하고 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비계의 조립 시 위험방지 (제59, 6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립기준을 준수하고 벽이음을 견고히 설치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 설치 시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장착 조립·해체 시 안전대 체결
	달비계 작업 시 위험방지 (제63, 6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대 탑승 전 안전대 착용 및 구명줄에 체결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은 다른 고정점에 결속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작업용 섬유로프, 구명줄 및 고정점 사용 로프는 2개 이상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 작업용 섬유로프, 구명줄이 건물이나 구조물의 끝부분 등에 의하여 절단되거나 마모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 덮개 설치 와이어로프는 규정된 마모, 끊어짐, 늘어남 또는 손상, 심한 변형이 없는 것을 사용 사업 시작 전 달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
	이동식비계 (제6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전도방지를 위해 바퀴고정용 빼기(브레이크) 및 하부 아웃트리거 및 승강용 승강용사다리를 견고히 설치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f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
고소 작업대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제18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공통) 붐길기와 각도에 적합한 적재하중 및 허용 작업반경 준수(차량 탑재형) 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및 작동유무 확인(시저형)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한 수평 유지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하게 사용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이동통로의 요청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 할 것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 착용 관계자가 아닌 사람 작업구역 접근 방지 조치 작업대는 정격하중 이내 사용

끼임																
위험요인	항목 (관련근거)	착안 사항														
공통	사용의 제한 (제3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호조치 미실시, 법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자율안전기준 또는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 사용금지 														
방호장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제8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의 동력전달부 또는 가동 부분 등에 덮개·울·건널사다리 등 설치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높이 2.5미터 이상)에 비상정지 장치 설치 동력이 끊어진 경우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 														
	동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제10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재가공용 동근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 설치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제19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베이어 등에 비상시에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 설치 														
	방호장치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기구별 적합한 방호장치 설치 및 정상 작동상태 유지 ※ 예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기계·기구</th> <th>방호장치 종류</th> </tr> </thead> <tbody> <tr> <td>사출성형기</td> <td>연동구조의 게이트가드 등</td> </tr> <tr> <td>프레스 등</td> <td>광전자식 방호장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등</td> </tr> <tr> <td>식품혼합기</td> <td>연동장치가 설치된 투입구 덮개 등</td> </tr> <tr> <td>산업용로봇</td> <td>1.8미터 이상 울타리, 감응형 방호장치, 연동장치 설치된 출입문 등</td> </tr> <tr> <td>크레인</td> <td>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td> </tr> <tr> <td>압력용기</td> <td>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 등)</td> </tr> </tbody> </table>	기계·기구	방호장치 종류	사출성형기	연동구조의 게이트가드 등	프레스 등	광전자식 방호장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등	식품혼합기	연동장치가 설치된 투입구 덮개 등	산업용로봇	1.8미터 이상 울타리, 감응형 방호장치, 연동장치 설치된 출입문 등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 등)
	기계·기구	방호장치 종류														
	사출성형기	연동구조의 게이트가드 등														
프레스 등	광전자식 방호장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등															
식품혼합기	연동장치가 설치된 투입구 덮개 등															
산업용로봇	1.8미터 이상 울타리, 감응형 방호장치, 연동장치 설치된 출입문 등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 등)															
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9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호장치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 사용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 금지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제9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 금지 															
점검·수리시 전원잠금 및 표지부착 (Lock-Out, Tag-Out)	운전 시작 전 조치 (제9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시 해당 기계의 운전 정지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 설치 기계가 가동될 우려가 있을 경우 작업지휘자 배치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있는 경우 미리 방출 														
	차량계 건설기계 수리 등 작업 시 조치 (제205, 20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계 건설기계 점검·수리작업 시 안전지시대 또는 안전블럭 사용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 														

부딪힘		
위험요인	항목 (관련근거)	착안 사항
충돌 방지장치 혼재작업	출입의 금지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에게 위험을 밀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금지 조치
	안전한 이동통로 설치 (제21~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로는 75력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 설치 ▪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유지 ▪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 표시 ▪ 통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 없도록 조치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38~4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된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굴착작업,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지휘 ▪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등 지정된 작업을 하는 경우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함
	제한속도의 지정 등 (제9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여야 함 ▪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방호장치의 조정 (제13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레인, 이동식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
	양중기 해지장치의 사용 (제137, 14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 사용
	크레인 수리 등의 작업 (제13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행로에 병렬로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의 수리 등 작업 시 감시인을 두고 주행로상에 스톱퍼(stopper)를 설치 등 위험 방지 조치 ▪ 작업장 바닥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40cm 이상) 확보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제14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제외)
	와이어로프 (규칙 제166~17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구로서 변형·균열이 있는 것은 크레인의 고리걸이 용구로 사용해서는 안됨 ▪ 안전율 3 이상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 구매 사용 ▪ 와이어로프와 체인은 규정된 마모, 끊어짐, 늘어남 또는 손상, 심한 변형이 없는 것을 사용

부딪힘		
위험요인	항목 (관련근거)	착안 사항
충돌 방지장치 혼재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접촉 방지 등 (제171~173, 39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사용 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부동침하,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 출입 금지 조치(유도자를 배치한 경우 제외) 화물 적재 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 적재,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최대적재량 이내 적재
	지게차 전조등의 설치 등 (제179~18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게차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어 사용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
	건설기계 등 접촉의 방지 (제199~200조, 33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 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부동침하,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 출입 금지 조치(유도자를 배치한 경우 제외)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아웃트리거 손상 등에 의한 전도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 실시
	굴착기 위험방지 조치 (제221조의2~222조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굴착기에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설치 굴착기 운전자는 좌석안전띠를 착용 굴착기 콕커플러에 버킷, 브레이커, 크램셀 등 작업장치를 장착 또는 교환하는 경우 안전핀 등 잠금장치 체결 및 확인
	교량작업 시 준수사항 (제36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시 작업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 출입 금지 재료, 기구 또는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경우 달줄, 달포대 등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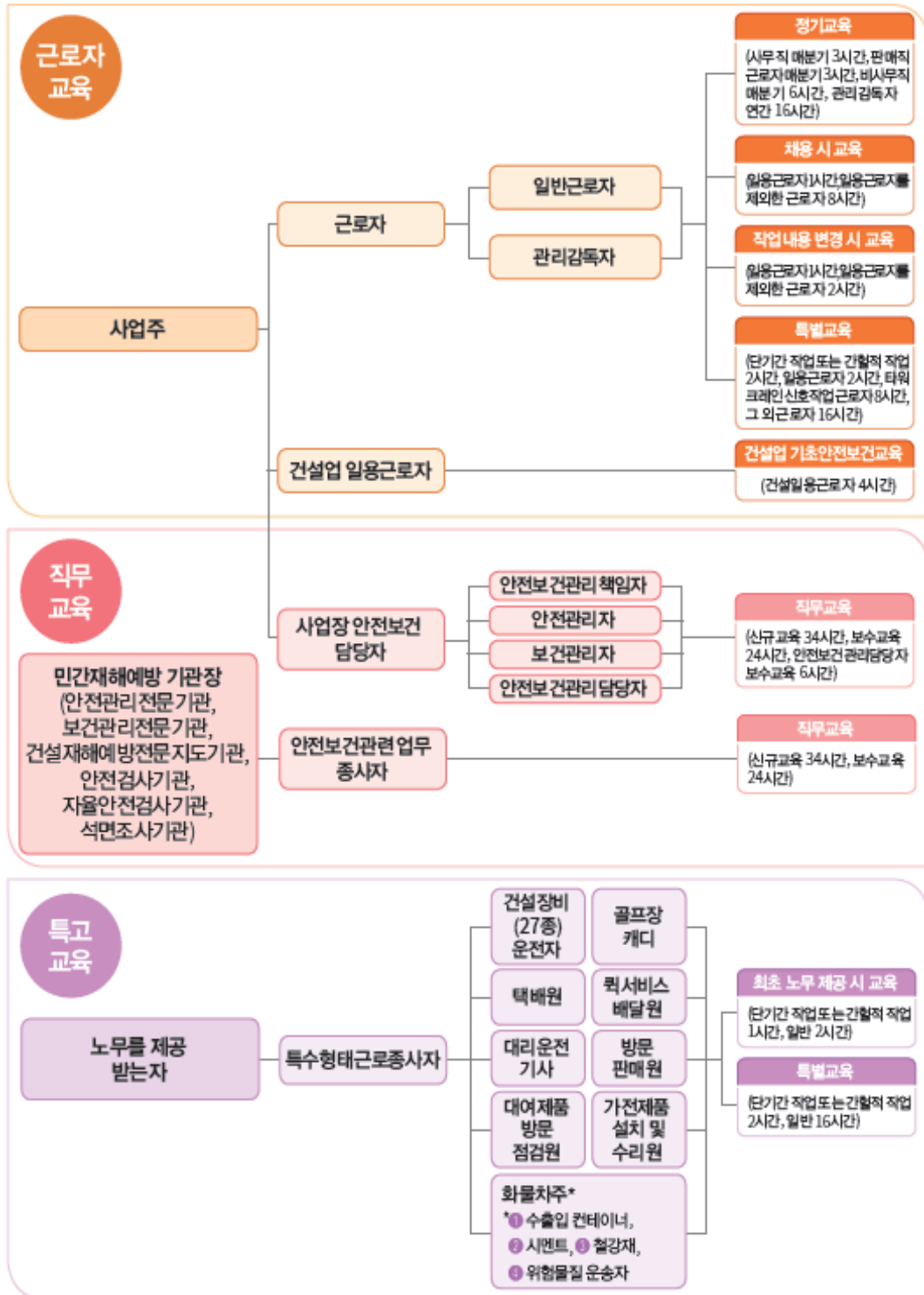
참고 7 업종별 산재예방 지원사업 안내

업종	분야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A. 제조업 및 기타 업종	안전	①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제외) 	<p>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p> <p>☞ 자세한 내용은 clean.kosha.or.kr 참조</p>
		②안전전자 혁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인 미만 사업장 등 ①구조적으로 안전성이 미확보된 이동식크레인 등 보유사업장 ②부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보유 또는 끼임·추락 고위험 3대 업종 사업장 	<p>위험기계 교체(50%, 0.7억원 한도) 및 위험공정 개선 비용의 일부(50%, 1억원 한도) 지원</p> <p>☞ anto.kosha.or.kr 참조</p>
		③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및 소속 사내·외 협력업체 *고득점 순위 ①대기업, 공기업·공공기관(모기업 기준) ②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참여 ③취약 중소기업 다수 참여 등 順 	<p>중소규모 협력업체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소요비용을 지원하여 원·하청 안전보건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사망사고 감축 기반을 마련</p> <p>☞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소개 → 산업안전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조</p>
		④산업재해예방 시설용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p>산재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한도 10억원) 융자 지원</p> <p>☞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산업재해 예방시설 용자지원 참조</p>
		⑤안전동행 프로그램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업(프랜차이즈, 단체급식), 도소매업(대형유통), 건물관리업, 기타의 본사 및 현장(지점) 	<p>지점을 다수 보유한 본사의 안전보건 지원체계 구축 컨설팅</p> <p>☞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소개 → 서비스지원 → 안전동행 프로그램 구축지원 참조</p>
		⑥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랫폼 이용 종사자* * ①이륜차 ②택배기사 ③대리·택시기사 	<p>플랫폼 이용 종사자의 안전의식 및 플랫폼사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사고다발구역 알림, 스핏교육영상 제공 등) 무료 제공</p> <p>☞ service.kosha.or.kr</p>
		⑦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인 미만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의 별표21에 규정 	<p>작업환경측정 비용(신규 100% 100만원 한도, 기존 80%, 40만원 한도) 지원</p> <p>☞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디딤돌 참조</p>

업종	분야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A. 제조업 및 기타 업종	안전	⑧배치전·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인 미만 사업장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01조의 별표22에 규정 	지원대상에 따라 건강진단비용 차등 지원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디딤돌 참조
		⑨직종별 건강진단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환경 미화원(50인 미만),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등 	건강진단 1,2차 검진 비용 80% 지원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직종별 건강진단 참조
B. 건설업	안전	①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에 소요되는 임차 및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 ☎ clean.kosha.or.kr 참조
		②질식사해예방 현장지원 (One-Call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식사고 고위험업종 및 밀폐공간* 작업사업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18조의 별표18에 규정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지원, 현장 교육 및 장비 무상대여 등 ☎ 대여신청: 1644-8595
	③건설일용직 배치전·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01조의 별표22에 규정 	배치전·특수건강진단 1,2차 검진 비용 차등 지원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디딤돌 참조	
C. 모든 업종	안전	①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컨설팅	제조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제조업(10인~49인 이하), 기타(5인~49인 이하) *(공단)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등 순 ***(위탁) 최근 3년간 재해발생사업장 중 업종별·규모별 평균재해율 5배 이상 등 순 건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제조업(10인~49인 이하), 기타(5인~49인 이하) *(공단) 중대재해 발생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등 순 ***(위탁) ①컨설팅 희망업체, ②중대재해 발생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등 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공단 직접지원 및 민간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7대 핵심요소) 구축·지원 ☎ 문의: 1644-4544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소개 → 산업안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조
		②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구축지원 (KOSHA-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SHA-MS 인증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시 실태심사 전후에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 컨설팅 지원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소개 → 건설(산업)안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참조
		③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 50인 미만 제조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임업, 광업 등 (화학) 50인 미만 제조업 (건설) 1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서비스) 50인 미만 서비스업 	재해발생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 대상을 선정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안전관리 기술지원(안전, 보건, 건설, 화학, 서비스분야) ☎ 문의: 1644-4544

업종	분야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C. 모든 업종	안전	④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50인 미만 제조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임업, 광업 등 ▪ (화학) 50인 미만 제조업 ▪ (건설) 1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 (서비스) 50인 미만 서비스업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하고 관리·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여 위험성평가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지원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사업장 ▪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우수사업장 인정 시 산재보험료율 20% 인하 및 정부 포상·표창 우선추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보조금 1천만원 추가지원 등 혜택 부여 * 50인(건설업 120억)미만 사업장은 공단에 컨설팅 신청가능(무상지원) ☞ kras.kosha.or.kr 참조
		⑤ 안전보건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규모 사업장 및 산재취약계층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활동 지원교육, 지역특화 사망사고 예방교육, 법정·정책교육, 산재취약계층 교육 등을 전문강사가 현장방문을 통해 교육 지원 ☞ koshats.or.kr 참조
	보건	⑥ 건강관리 카드발급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 등 16종 물질*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14조의 별표25에 규정	직업성 암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건강관리 카드를 발급하고 카드소지자에 대해 이직 후 연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 참조
		⑦ 뇌·심혈관 고위험노동자 심층건강 진단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로사 위험이 있는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근로자로 특정 조건*에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①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 ②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고위험 이상, ③ 만55세 이상, ④ 근로자건강센터 의뢰 등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노동자에게 심층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진단결과 뇌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은 노동자에게 건강상담 및 사후관리를 실시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참조
		⑧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리미 서비스 제공가능 물질(165종)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주 또는 근로자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노출정보(노출량, 유해성 등)를 희망하는 사업장에 대한 노출량 평가 등 무료서비스 지원 ☞ 문의: 052-703-0649
		⑨ 근로자 건강센터 (분소)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근로자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우선 지원	사업장 밀집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직업병 예방, 직무스트레스 상담 등 직업건강 서비스 제공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근로자 건강센터 참조
		⑩ 직업 트라우마 센터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 	외상 후 스트레스(트라우마) 증상을 극복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 지원 → 근로자 건강센터 참조

참고 8 안전보건교육 체계도



참고 9 '24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지표

안전관리전문기관

- 전체 배점(1,000점) 중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500점

분야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지표 적용	
				전국·단일	지도사
A. 운영 체계 (200)	합 계				
	소계		200	200	100
	1. 운영관리	① 운영규정·기술지도 매뉴얼 적정성	50	50	25
		② 보유장비·기술자료 활용	50	50	50
	2. 인력관리	① 고급인력 보유	50	50	-
②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 등 역량개발 노력		50	50	25	
B. 업무 충실성 (500)	합 계		500	500	600
	1. 위험요인 확인	①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 지도	50	50	50
		②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등 적정성 지도	100	100	100
		③ 중점 위험요인(3대 사고유형 8대 요인) 확인	50	50	75
		④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	50	50	75
	2. 위험요인 개선	① 위험성 감소대책의 적정성	50	50	75
		② 감소대책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50	50	75
		③ 감소대책 미이행 사업장 관리	50	50	50
		④ TBM 등 위험성평가 결과 전달 지도	100	100	100
C. 업무 성과 (300)	합 계		300	300	300
	1. 재해감소	①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200	200	200
	2. 만족도 등	① 만족도, K2B 시스템 활용	100	100	100
D. 가감점 (±100)	합 계		±100	±100	±100
	1. 우수사례	① 기술지도 우수사례, 포상	+100	+100	+100
	2. 행정처분	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100	-100	-100

보건관리전문기관

- 전체 배점(1,000점) 중 작업환경 관리 등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유해인자 관리지도 200점

분야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지표 적용	
				전국·단일	지도사
A. 운영 체계 (200)	소계		200	200	100
	1.운영관리	① 운영규정·기술지도 매뉴얼 적정성	50	50	25
		② 보유장비·기술자료 활용	50	50	50
	2.인력관리	① 고급인력 보유	50	50	-
		②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 등 역량개발 노력	50	50	25
B. 업무 충실성 (500)	소계		500	500	600
	1.작업환경 관리	①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유해인자 관리 지도	50	50	75
		② TBM 등 위험성평가 결과 전달 지원	50	100	75
		③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	50	50	75
		④ 보건조치 미이행 사업장 관리	50	50	75
	2.위험요인 개선	① 위험성 감소대책의 적정성	50	50	75
		② 감소대책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50	50	75
		③ 감소대책 미이행 사업장 관리	50	50	50
		④ TBM 등 위험성평가 결과 전달 지도	100	100	100
C. 업무 성과 (300)	소계		300	300	300
	1.재해감소	① 업무상 질병 감소, 작업환경개선 실적 등	200	200	200
	2.만족도 등	① 만족도, K2B 시스템 활용	100	100	100
D. 가감점 (±100)	소계		±100	±100	±100
	1. 우수사례	① 기술지도 우수사례, 포상	+100	+100	+100
	2.행정처분	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100	-100	-100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전체 배점(1,000점) 중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500점

분야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지표 적용	
				전국·단일	지도사
A. 운영 체계 (200)	소계		200	200	100
	1. 운영관리	① 운영규정·기술지도 매뉴얼 적정성	50	50	50
		② 보유장비·기술자료 활용	50	50	50
	2. 인력관리	① 고급인력 보유 노력	50	50	-
		② 역량개발 노력	50	50	0
B. 업무 충실성 (500)	소계		500	500	600
	1. 유해·위험 요인 확인	① 유해·위험요인 정보 파악의 적정성	100	100	150
		② 기술지도 보고서의 적정성	50	50	50
		③ 기술자료 제공의 적정성	50	50	50
		④ 안전활동 사례	50	50	50
	2. 유해·위험 요인 개선	① 개선대책의 적정성	100	100	100
		② 개선대책 미이행 사업장 관리	50	50	50
		③ 기술지도 개선실적	50	50	100
		④ 향후 공정 재해예방대책 적정성 등	50	50	50
	C. 업무 성과 (300)	소계		300	300
1. 재해감소		① 사망만인율 감소	200	200	200
2. 만족도 등		① 현장만족도, K2B 시스템 활용	100	100	100
D. 가감점 (±100)	소계		±100	±100	±100
	1. 우수사례	① 기술지도 우수사례, 포상	+100	+100	+100
	2. 행정처분	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100	-100	-100

직무교육기관

- 전체 배점(1,000점) 중 위험성평가 실적 가감점 50점

분야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합 계				
A 운영 체계	소계				200
	A.1	운영관리 (80)	1.1	연간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40
			1.2	업무규정(매뉴얼) 수립의 적정성	20
			1.3	실습용 장비 보유 여부	20
	A.2	인력관리 (120)	2.1	전담인력 활용 노력	30
			2.2	강사 역량강화 활동 노력(외부전문화교육 이수율)	40
			2.3	강사 역량강화 활동 노력(강사의 전문성 향상노력도)	50
B 업무 총 실 성	소계				600
	B.1	총실도 (500)	1.1	강의평가(과정 충실도)	100
			1.2	강의평가(이해 수준)	200
			1.3	강의평가(강의 만족도)	100
			1.4	교육교재 평가(교육 내용의 충실성)	100
	B.2	교육관리 (100)	2.1	교육과정별 학급정원의 적정성	40
			2.2	교육결과보고서 작성·보관의 적정성	30
2.3			전문화 교육과정 개설 여부	30	
C. 업 무 성 과	소계				200
	C.1	운영성과 (200)	1.1	실습교육 활성화 실적	100
	C.2		2.1	교육이수자 만족도	100
D. 가· 감 점	소계				-210~+120
	가 감 점	정부정책 반영 노력도 (-210~+120)	1.1	교육과정별 교육생 업종 동질성	-30
			1.2	위험성평가 실적	+50
			1.3	K2B 전산 관리의 적정성	+20
			1.4	교육정보 관리 노력도	-20
			1.5	교육수료자 중 지연등록자 비율	-20
			1.6	업무정지 처분	-90
			1.7	시정조치·경고처분	-50
			1.8	포상실적	+50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 전체 배점(1,000점) 중 위험성평가 실적 가감점 50점

분야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합 계				1,000
A 운영 체계	소계				200
	A.1	운영관리 (80)	1.1	연간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40
			1.2	업무규정(매뉴얼) 수립의 적정성	20
			1.3	실습용 장비 및 보호구 보유	20
	A.2	인력관리 (120)	2.1	전담인력 활용 노력	30
			2.2	강사 역량강화 활동 노력(외부전문화교육 이수율)	40
			2.3	강사 역량강화 활동 노력(강사의 전문성 향상 노력)	50
B 업무 총 실 성	소계				600
	B.1	총실도 (500)	1.1	강의평가(과정 충실도)	100
			1.2	강의평가(이해 수준)	200
			1.3	강의평가(강의 만족도)	100
			1.4	교육교재 평가(교육 내용의 충실성)	100
	B.2	교육관리 (100)	2.1	교육과정별 학급정원의 적정성	40
			2.2	교육교재 보유의 적정성	30
2.3			교육결과보고서 작성·보관의 적정성	30	
C 업무 성 과	소계				200
	C.1	운영성과 (200)	1.1	실습교육 활성화 실적	100
			2.1	교육이수자 만족도	100
D. 가 감 점	소계				(-190~+120)
	가 감 점	정부정책 반영 노력도 (-190~+120)	1.1	학급당정원및교육생업종동질성(교육과정별 교육생 업종 동질성)	-20
			1.2	학급당정원및교육생업종동질성(관리감독자 교육업종 동질성)	-10
			1.3	위험성평가 실적	+50
			1.4	K2B 전산 관리(자체평가보고서 등록)의 적정성	+20
			1.5	교육수료자 중 지연등록자 비율	-20
			1.6	업무정지 처분	-90
			1.7	시정조치·경고처분	-50
			1.8	포상실적	+50

참고 10**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개정 2023. 5.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2.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3.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사업장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집행·조정·홍보
2. 위험성평가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시책의 운영
4. 위험성평가 실시의 지원
5.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6.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5조(위험성평가 실시주체)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위험성평가의 대상) ①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이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하 “아차사고”라 한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서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제15조제2항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밖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제15조제3항의 위험성평가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3.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①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할 것
3.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시행할 것
4.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5.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법 제47조)
2.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4조).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 위험성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4.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⑤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5. 그 외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경우 제1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전준비
2.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삭제
4. 위험성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제9조(사전준비)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 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근로자에 대한 참여·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보존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2.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이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위험성의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제10조(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사업장 내의 제5조의2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3. 설문조사·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5.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6.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제11조(위험성 결정) ① 사업주는 제10조에 따라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① 사업주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②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수준이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위험성평가의 공유)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
2. 제1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3. 제1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기록 및 보존) ① 규칙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은 제15조에 따른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①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이때, 해당 기간 내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재검토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검토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제12조에 따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④ 사업주가 사업장의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의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11조의 위험성 결정 및 제12조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을 할 것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3.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주지할 것

제3장 위험성평가 인정

제16조(인정의 신청) ①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에 대해 인정해 주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사업주의 사업장(이하 “도급사업장”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주의 사업장(이하 “수급사업장”이라 한다)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본다.

2.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② 제2장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을 제1항의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광역본부장·지역본부장·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은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단위 사업장(또는 건설공사)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22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2. 최근 1년 이내에 제22조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
 - ④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도급사업장의 사업주가 수급사업장을 일괄하여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신청에 포함하는 해당 수급사업장 명단을 신청서에 기재(건설공사를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장이 제19조에 따른 인정을 별도로 받았거나,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인정신청에서 해당 수급사업장을 제외할 수 있다.

제17조(인정심사) ① 공단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정하는 항목을 심사(이하 “인정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주의 관심도
2.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3.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4. 재해발생 수준

② 공단 광역본부장·지역본부장·지사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1항의 인정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심사는 현장심사 전일을 기준으로 최초 인정은 최근 1년, 최초인정 후 다시 인정(이하 “재인정”이라 한다)하는 것은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인정사업장 사후심사를 위하여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실시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는 제18조에 따른 인정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인정심사위원회는 현장심사 결과 등으로 인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16조제4항에 따른 도급사업장의 인정심사는 도급사업장과 인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장(건설공사의 수급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사업장의 인정심사는 사업장 내의 모든 수급사업장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인정심사의 세부항목 및 배점 등 인정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업종별, 규모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공단은 위험성평가 인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위험성평가 인정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인정 여부의 결정
2. 인정취소 여부의 결정
3. 인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
4.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의 개정 건의
5. 그 밖에 인정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인정심사위원회는 공단 광역본부장·지역본부장·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장(산재예방지도과가 설치되지 않은 관서는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9조(위험성평가의 인정) ① 공단은 인정신청 사업장에 대한 현장심사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제2장에서 정한 방법, 절차 등에 따라 위험성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2. 현장심사 결과 제17조제1항 각 호의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점을 미달하는 항목이 없고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사업장

② 인정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인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결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정심사를 한 경우에는 인정심사 기준을 만족하는 도급사업장과 수급사업장에 대해 각각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이 결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정취소 사유 발생일 전날까지로 한다.

⑤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 중 사업이 법인격을 갖추어 사업장관리번호가 변경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동일 사업장임을 인정 받을 경우 변경 후 사업장을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으로 한다. 이 경우 인정기간의 만료일은 변경 전 사업장의 인정기간 만료일로 한다.

1. 변경 전 · 후 사업장의 소재지가 동일할 것
2. 변경 전 사업의 사업주가 변경 후 사업의 대표이사가 되었을 것
3. 변경 전 사업과 변경 후 사업간 시설 · 인력 · 자금 등에 대한 권리 ·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하였을 것

제20조(재인정) ① 사업주는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 신청서 제출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인정을 신청한 사업장에 대한 심사 등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재인정 심사의 범위는 직전 인정 또는 사후심사와 관련한 현장심사 다음 날부터 재인정 신청에 따른 현장심사 전일까지 실시한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④ 재인정 사업장의 인정 유효기간은 제19조제4항에 따른다. 이 경우, 재인정 사업장의 인정 유효기간은 이전 위험성평가 인정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21조(인정사업장 사후심사) ① 공단은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인정사업장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사후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인정심사 위원회에서 사후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 다만, 사후심사일 현재 잔여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건설 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2.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점 미만인 사업장으로 사후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3. 그 밖에 무작위 추출 방식에 의하여 선정한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한 연간 사후심사 사업장의 50퍼센트 이상을 선정한다)

③ 사후심사는 직전 현장심사를 받은 이후에 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현장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며, 해당 사업장이 제19조에 따른 인정 기준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22조(인정의 취소) 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서 인정 유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사업장
 2. 직·간접적인 법령 위반에 기인하여 다음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규칙 제2조)
 - 가. 사망재해
 - 나.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3. 근로자의 부상(3일 이상의 휴업)을 동반한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4.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 공표된 사업장(영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한정한다)
 5. 제21조에 따른 사후심사 결과, 제19조에 의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
 6. 사업주가 자진하여 인정 취소를 요청한 사업장
 7. 그 밖에 인정취소가 필요하다고 공단 광역본부장·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인정한 사업장
- ② 공단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정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정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인정취소일로 본다.

제23조(위험성평가 지원사업) ① 장관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추진기법 및 모델, 기술자료 등의 개발·보급
 2. 우수 사업장 발굴 및 홍보
 3. 사업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
 4. 사업장 컨설팅
 5. 전문가 양성
 6.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7. 인정제도의 운영
 8. 그 밖에 위험성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추진결과 및 성과를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위험성평가 교육지원) ① 공단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주 교육
2. 평가담당자 교육
3. 전문가 양성 교육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가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에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시간만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위험성평가 컨설팅지원) ① 공단은 근로자 수 50명 미만 소규모사업장(건설업의 경우 전년도에 공시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가 200위 초과인 종합건설업체 본사 또는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의 사업주로부터 제5조제3항에 따른 컨설팅지원을 요청 받은 경우에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컨설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컨설팅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의 공단 광역본부장·지역본부장·지사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 광역본부장·지역본부·지사장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직접 선정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26조(지원 신청 등) ①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 및 제25조에 따른 컨설팅지원의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신청 및 비용 등은 교육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육기관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신청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업장이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과 제25조에 따른 컨설팅지원을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 대상, 비용지급 방법 및 기관 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 ④ 공단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감소대책의 실행을 위하여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용자 및 보조업무처리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⑤ 공단은 제19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제20조에 따른 재인정, 제22조에 따른 인정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인정일 또는 재인정일, 인정취소일 및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근로자 수, 인정 유효기간 등의 현황을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 예방지도과(산재예방지도과가 설치되지 않은 관서는 근로개선지도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인정사업장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7조(인정사업장 등에 대한 혜택)** ① 장관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 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 동안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유예하는 안전보건 감독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산업안전보건)」제10조 제2항에 따른 기획감독 대상 중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③ 장관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및 그 밖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키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3-19호, 2023.5.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위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도 매뉴얼

발행일 2023년 6월

발행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

류경희
최태호
금정수, 김현아, 김종률
안영곤, 박수호, 이수준
이상백, 천병두, 박희상

[안전보건공단]

이 사장
산업안전실
위험성평가지원단
공단발간번호

안종주
김인성
이동욱, 정호석, 정회욱
2023-산업안전실-223

문의처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

T 044-202-8827, 8828
T 052-703-0624